

월간

재정포럼 10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10월호 제196호

-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박한준
-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성명재

- 특집** • ● 2013년 예산안 편성

- 공공정책포럼** • ●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CONTENTS

권두칼럼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선안 소고 · 백우진 02

현안분석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박한준 06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 성명재 18

특집 · 2013년 예산안 편성

‘경제활력 ·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 편성 · 강승준 35

2013년 예산안 평가 · 홍승현 40

정책연구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 최기호 50

공공정책포럼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58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EU 외 66

정책흐름

비과세 · 감면제도 서민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 · 87

2012년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89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92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95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106

이슈&포커스

[시론] 중장기 나라곳간 분석을 서둘러라 외 109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선안 소고



백우진
아시아경제신문 정경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무려 6,358만건에 달했다. 한 해 동안 가입자 4,930만명이 1인당 1.3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민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일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는 직장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라 부담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둘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가구별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다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자와 초과자로 나뉘어 달라진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자영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거나, 부동산을 임대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직장가입자이어서 건보료를 조금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소득자나 거액자산가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기도 한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1,340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 지역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1,604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퇴직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건보료가 늘거나,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을 위해 구입한 중고차 때문에 건보료가 증가하기도 한다.

개선안,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애고 건보료를 소득에만 부과

건보공단은 건보료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부과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체제 개선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를 소득에만 물린다는 것이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없어지는 대신 부과되는 소득이 근로·사업소득 위주에서 금융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된다.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원이건 세대주이건 모두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소득을 올려 건보료를 내

는 사람과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또 건보료 수입 확충을 위해 간접세처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할 때 물리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보료로 떼어내자는 것이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걷는 건보료가 담배에 붙는 부담금이다.

개선안을 일부 구체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월평균 건보료를 52만원 더 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해당 직장인에게는 10월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9·10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됐다.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로 건보료가 연간 2,158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건강보험채신위원회를 발족했고, 채신위는 지난 9월에 '건강복지 플랜'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뼈대는 이 보고서에서 마련됐다. 채신위는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줄여주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부과방안을 마련하며 소비에 붙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건보료로 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간접세 방식 건보료 징수는 건강보험법과 세법을 개정해 국회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시행에 들어간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해 개선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건보료는 준조세에 해당한다. 개선안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합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못지않은 금액을 추가 건보료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 물리는 추가 건보료는 고소득자에게 지우는 이중부담이다. 그들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미 누진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소비에 간접세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하는 방안도 논란

소비에 간접세 방식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도 논란거리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지도록 하는 역진적인 속성이 있어 소득재분배를 저해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는데, 여기에 추가로 준(準)간접세를 얹는 것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소비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버리기엔 아까운 카드다. 담배 외에 술, 고지방음식 등 몸에 해로운 다른 상품에도 건보료를 매기면 어떨까. 건보 수

.....

종합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 물리는 추가 건보료는 고소득자에게 지우는 이중부담이다. 그들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미 누진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

.....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은 건보의
형평성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입을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건강을 악화시키는 소비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건강한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은 건보급여를 덜 받으므로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도록 건보급여와 건보료를 어느 정도 연계시킨다면 건보 재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지 않을까?

건보 재정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추세로 인해 해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재정 적자는 2010년에 1조 2,994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0년에 건보 적자가 17조 2,598억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49조 5,654억원으로 불어나리라고 전망했다. 건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 적자는 정부가 관리대상수지에서 내는 흑자를 압도한다. 정부의 관리대상수지와 건보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해 산정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형평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 긴요

현재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제대로 부과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은 약 80%이고, 이 비율은 자영업자로 가면 60~70%로 떨어진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이만큼 개선됐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은 건보의 형평성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범 이후 35년 동안 건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를 끌어올렸다. 이제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박한준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I. 서론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정부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 구현방안」으로 고졸인력 채용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학력보다는 능력'중심의 인력수급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졸인력 채용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능력중심의 인재채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단체와 정부기관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공공부문에서 학력기준의 채용관행이 실제로 쟁점화되어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3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차별연구회'가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제한 철폐를 권고하였으며, 2007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이를 공공기관 인사지침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입사지원 시 학력제한을 폐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력제한 철폐는 본래 정책취지와는 정반대로 고졸자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1998년 경제위기 등에 따라 고용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감소하였다. 학력제한이 철폐되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이 대졸직급 공채뿐만 아니라, 고졸수준 인력채용을 위한 공채에도 지원하면서 인력공급을 직무의 특성과 전문성 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고용시장의 기능이 퇴색하였다. 즉, 고졸인력과 고학력인력이 경쟁하는 구조로 왜곡된 것이다.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70~80%대를 유지하면서 고학력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학력제한 철폐조치는 오히려 고졸인력의 고용기회를 잠식하여 취업난을 심화시켰다.

최근 몇 년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졸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신규채용의 약 20% 수준을 고졸인력으로 충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전력 및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고졸인력 채용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금년도 고졸인력의 채용규모는 약 2,35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공 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122개 주요 기관은 신규채용의 22.6%를 고졸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졸인력 채용을 주도하여 왔다는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고졸채용 확대 추진과정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향후 고졸채용 규모의 장기적인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과거 많은 기관에서 고졸취업자 규모가 전체 채용규모의 5% 수준에도 못 미쳤던 관행에 비추어본다면 금년도 공공기관의 고용방향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드라이브가 고졸인력의 안정적 채용통로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용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는 청년고용시장 상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졸인력 채용의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고졸채용 활성화 방향을 모색한다.

II. 청년인력의 고용현황과 쟁점

1. 청년고용률

OECD 통계자료(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2011년기준)¹⁾은 23.5%로 해외 주요국인 영국(50.14%), 프랑스(29.91%), 일본(39.07%)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청년고용률 하락추세가 전체 고용률 하락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인력 고용 악화에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5% 이상 낮은 상태이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고졸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청년고용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시켜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KDI, 2012).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5% 이상 낮은 상태이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고졸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청년고용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취업연령대에 진입하는 고졸자 대다수가 진학하거나 군복무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에서 청년고용률이 낮은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최고 수준의 진학률 때문에 청년층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기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려운 청년취업 여건과 현실이 많은 고졸자들의 진학동기가 되었다면, 단순히 높은 진학률을 청년고용률이 낮은 까닭으로 보기보다는 고용경색과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진학률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보고, 본질적인 대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직업 및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청년고용 현실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1) 청년고용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함

〈표 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연도별 비교 (2001, 2006~2010)

(단위: %)

연 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OECD	전 체	67.34	68.36	68.89	69.03	67.29	67.30	67.52
	청 년 (A)*	29.14	26.50	26.14	25.78	23.18	22.67	22.32
	청 년 (B)*	44.64	43.19	43.17	42.79	39.90	39.48	39.54
한국	전 체	65.38	68.03	68.33	68.22	67.38	67.71	68.43
	청 년 (A)	10.07	6.74	6.59	5.87	5.42	6.12	6.77
	청 년 (B)	30.09	27.18	25.68	23.80	22.90	23.00	23.05
미국	전 체	75.48	74.75	74.65	73.93	70.72	69.84	69.97
	청 년 (A)	42.31	36.95	34.81	32.64	28.38	25.90	25.79
	청 년 (B)	57.71	54.25	53.13	51.23	46.85	45.00	45.45
영국	전 체	73.60	74.19	74.00	74.42	72.45	72.33	72.61
	청 년 (A)	51.98	45.00	42.34	43.08	37.62	35.38	33.14
	청 년 (B)	61.05	57.65	56.45	56.32	51.86	50.69	50.14
프랑스	전 체	62.94	63.89	64.59	65.17	64.36	64.24	64.32
	청 년 (A)	10.62	11.17	12.15	11.97	11.04	11.14	10.56
	청 년 (B)	29.31	29.83	31.05	31.36	30.55	30.29	29.91
스웨덴	전 체	76.62	75.98	77.25	77.51	74.05	74.48	75.97
	청 년 (A)	31.60	27.95	28.59	27.72	20.58	20.17	20.28
	청 년 (B)	48.70	44.77	46.83	46.41	38.38	38.48	40.41
독일	전 체	66.54	68.17	70.10	71.34	71.62	72.39	73.98
	청 년 (A)	29.78	26.60	28.33	29.03	28.06	27.31	27.55
	청 년 (B)	47.03	44.01	45.94	47.19	46.55	46.81	48.19
일본	전 체	74.35	76.04	77.14	77.45	76.94	77.56	77.33
	청 년 (A)	15.56	14.93	14.87	14.86	13.96	13.72	13.07
	청 년 (B)	41.96	41.40	41.43	41.37	39.89	39.16	39.07

주: 청년(A)는 15~19세, 청년(B)는 15~24세 기준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2. 전문계 고교 졸업자 진로현황

노동시장의 청년고용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률뿐만 아니라 전문계고 학생의 졸업 이후 진로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은 20세 이전에 자신의 직업경로를 선택하여 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력군으로, 노동시장

에서 이들의 고용현황을 통해 청년고용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진학률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진학 학생 규모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2009년 이러한 추세는 전체 졸업생의 74%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심화되었다(〈표 2〉 참조).

〈표 2〉 전문계고 졸업생 연간 취업률 및 진학률
(2001~2011)

(단위: 명 %)

연 도	졸업자수	취업현황		진학현황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2001	270,393	130,968	48.4	121,411	44.9
2002	231,127	104,138	45.1	115,103	49.8
2003	189,510	72,212	38.1	109,234	57.6
2004	182,835	60,062	32.9	113,944	62.3
2005	170,259	47,227	27.7	115,164	67.6
2006	162,600	42,151	25.9	111,601	68.6
2007	158,708	32,075	20.2	113,487	71.5
2008	158,408	30,036	18.9	115,407	72.9
2009	151,410	25,297	16.7	111,348	73.5
2010	156,069	29,916	19.2	111,041	71.1
2011	152,824	35,698	23.4	97,400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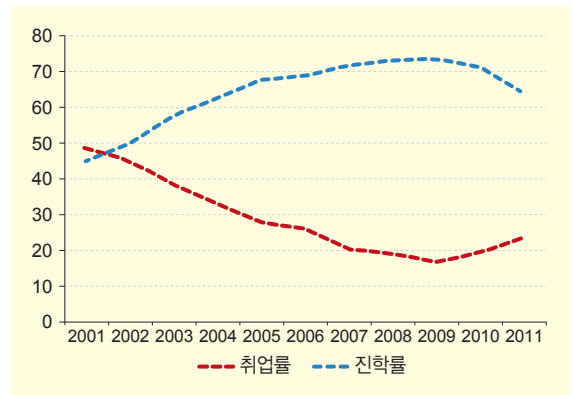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연보(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2012. 6.)

2001년 이후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점을 기록하였던 2009년도까지 9년 동안 전문계고 학생의 진학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반면 취업률은 절반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크게 변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73.5%)이 취업률(16.7%)보다 4배 이상 커지는 기현상으로 나타났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 상승과 취업률 감소현상뿐만 아니라 전문계고 졸업생 규모도 급감하여온 점 등을 관찰하면, 모두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낮아진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2001년 이후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고점을 기록하였던 2009년도까지 9년 동안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반면 취업률은 절반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1] 전문계고 졸업생 진로 변화추이 (2001~2011)

(단위: %)



2001년 이후 졸업생 수가 가장 적었던 2009년 사이 전문계고 졸업자가 11.9만명(44%) 줄어들면서 전체 학생 수가 급감하는 동안에도 진학자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취업자는 10.6만명(81%)이 감소하였다. 즉, 전체 학생 수 감소는 절대적으로 취업자 규모에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반계고 진학률이나 취업률과 비교한다면, 전문계고 경우 여전히 졸업생의 20%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관찰된 60~70%를 넘는 진학률은 2011년 일반계고 진학률 75.2%²⁾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³⁾ 이와 같이 취업을 전제로 학생진로를 지도하

2)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통계연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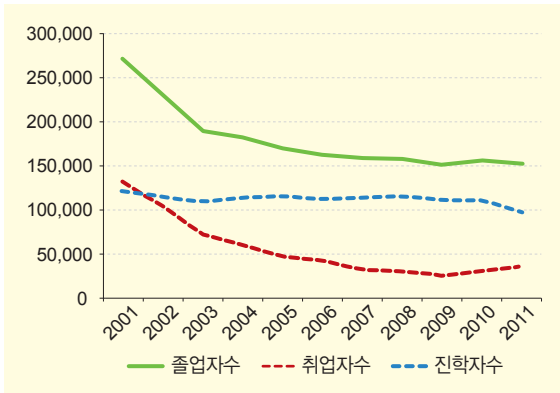
3) 일반계 고교의 진학률이 2010년까지는 80%를 상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75.2%인 것으로 파악됨(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참조)

최근까지 진학하려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청년고용문제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는 전문계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전문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조차 진로를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단순히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고용률이 낮은 이유라는 표면적인 해석보다 고졸 취업의 어려움이 전문계고 학생 수 감소와 졸업자들의 대학진학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어 진학률이 계속 상승해 온 현상을 성급하게 전문계고의 성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원인과 배경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림 2]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및 진학규모 비교 (2001~2011)

(단위: 명)



지난 10여 년간 전문계고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일반계고뿐만 아니라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

생들조차 상당수 진학하고 있어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기능과 역할 구분이 상당히 퇴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력과잉·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전문계고 학생규모가 줄고 졸업자들이 관심분야의 고급직식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학진학을 희망하여 진학률이 상승한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등교육 수혜범위의 확대는 오히려 사회전반의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입학시점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계고로 진학한 학생이 고용경색이나 학력차별로 인해 취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졸업 직후 취업하려는 고졸자가 줄면서 대학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진학하려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청년고용문제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3. 고졸자 취업현실과 문제점

청년고용과 고졸채용 현실에 관련된 연구 및 미디어매체들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사회적 관심이 고졸인력 취업에 집중되어 고졸채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표면적으로는 고졸채용은 인력을 공급하는 구직사이드와 일자리를 공급하는 구인사이드 모두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상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부족한 일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OECD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현실은 다른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제는 2001년 당시 청년 고용률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던 프랑스보다도 7% 정도 낮아졌다(〈표 1〉 참조).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3.5%, 프랑스는 29.91%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7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2011년 기준).⁵⁾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의 경우, 고졸인력을 활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졸인력의 입사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연구원(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계고를 졸업한 구직자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많은 기업인사담당자들이 지적하고 있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2011)가 실시한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수요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고졸인력의 입사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⁶⁾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구인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부족한 일자리’가 ‘고졸채용’의 장애요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졸인력들의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일자리’와 ‘구직자 부족’ 문제가 양립하는 외견상 모순적인 상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 수급과정이 고학력 인력중심으로 작동하면서 고졸인력의 취업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졸인력 규모가 커지면서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학력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졸자들은 경쟁에 참여하기조차 힘들게 되며 결과적

고졸인력들의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일자리’와 ‘구직자 부족’ 문제가 양립하는 외견상 모순적인 상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고졸채용 문제점의 핵심은 ‘고용의 양’보다는 ‘고용의 질’에 있는 것이다.

으로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전환하는 약순환구조가 재생산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 고졸채용 문제점의 핵심은 ‘고용의 양’보다는 ‘고용의 질’에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2012)가 실시한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47.4%), 그 다음으로 고용안정성(24.6%)을 꼽고 있는 반면, 업무내용의 적절성(5.2%)은 취업 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의 적합성보다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대학생들이 취업 시 선택기준 설문 결과

(단위: %)

구분	임금/복리후생 (①)	고용안정성 (②)	능력개발 (③)	회사의 비전 (④)	업무내용 (⑤)	복리와 안정 (①)+(②)
전체	47.4	24.6	13.1	9.7	5.2	72.0
성남	52.0	15.3	13.6	12.4	6.8	67.3
성녀	41.7	36.1	12.5	6.3	3.5	77.8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2, p.8) 표15) 재구성

4) 한국은 30%, 프랑스는 29%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음.

5) 양국의 청년 고용률이 모두 30% 미만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변화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청년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6) 대한상공회의소(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25.6%가 입사지원 부족을 고졸인력 활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입사후 대학진학을 위한 조기퇴사(15.1%), 남학생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인력유용 차질(11.9%)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공기관은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산업계의 매우 중요한 고용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고임금과 복리후생 여건이 좋으며 직장의 안정성이 확보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는 굳이 미디어 보도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기업(30.8%), 공무원 및 공공기관(25.2%), 외국계 기업(24.9%), 중견기업(10.3%), 중소기업(7.2%), 해외취업(1.6%) 순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도 고려하겠다'는 대학생들도 72.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12). 학력이 인력 선발의 주요 잣대로 기능할 경우, 고용경색에 따라 대졸자의 구직범위가 과거 고졸인력이 수행했던 분야까지 확대된다면 고졸자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대졸인력의 하향취업 경향이 심화되었던 우리나라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고졸자 취업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점들을 순환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졸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채용 확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들이 열린 채용을 통해 과거보다 고졸인력의 선발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고졸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체이기 때문이다.

III.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과 인력관리

1.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

공공기관은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산업계의 매우 중요한 고용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력차별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력에 의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기 이전부터 (구)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열린채용'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던 경험들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학력제한 철폐'라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은 최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2007년 당시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들이 채용과정에서 학력이나 연령을 잣대로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보수 등 인력관리상 학력요건이나 규제를 폐지·개선하기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학력 철폐를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정책대상을 '고졸자'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학력제한 철폐의 부작용으로 왜곡된 청년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고졸채용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정책의 상징성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OECD 통계자료와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통계에서 최근 3년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청년 고용은 낮으나, 2009년 이후 대부분 국가들은 계속하여 하락국면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는 하락국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계속하여 취업률 하락, 진학률 증가로 일관되었던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선택 경향도 2009년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10년도 통계를 보면, 10% 대로 떨어졌던 취업률은 2011년도 20% 수준을 다시 넘어섰으며, 진학률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1년 이후 11~12만명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진학자 규모도 9.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졸인력에 대한 기관 및 기업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현황

(단위: 명,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규모	1,394	890	293	437	590
비율	8.9	7.9	3.2	4.1	4.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 (2012. 5. 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를 보면, 2007년 1,336명에서 2009년 293명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채용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졸 채용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OECD 청년고용률, 전문계고 졸업자 취업률,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율이 2009년을 기점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졸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고졸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졸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기관 및 기업의 인력계획이 체계적으로 가능하여야 고졸 채용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졸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기관 및 기업의 체계적인 인력계획이 가능하여야 고졸 채용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관리

가. 고졸인력현황

개별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은 인력의 24%, 준시장형 공기업은 약 2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8%, 기타공공기관은 7% 정도가 고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전력·에너지, 철도와 같은 기능·기술직 수요가 많은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고졸인력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사기관들 사이에 편차가 있었다.

〈표 5〉 주요 공공기관 유형별 고졸인력 비율¹⁾

(단위: %)

유형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비율	20	19	9	10	14
최대기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학연금공단	인천항보안공사

주: 1) 주요 공공기관 현황조사(125개) 기준임(2011년)

7) 현원 대비 고졸인력 규모이며, 전체 공공기관 기준임(2011년)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고졸인력을 포함시킨 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졸적합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고졸인력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동일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고졸인력 비중도 기관에 따라 20%대에서 40% 수준까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관의 설립과 발전과정, 직무구조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유사기관 간 인력구조의 차이는 체계적인 인력계획과 관리가 고졸자 수행 적합 직무의 발굴, 그리고 고졸채용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작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⁸⁾

나. 고졸적합 직무비중과 내용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고졸인력을 포함시킨 장기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수행적합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당직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예년에 비해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인사지침이나 인력운용계획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기관 내부의 경험적 판단이나 자체 직무분석에 따라 고졸인력 수요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확인한 고졸인력 수요가 거의 없는 연구중심기관들을 제외한 120여개의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신규 고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

무비중은 공공기관 유형별, 주요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 유형별 비교에 따르면, 고졸직무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작년 기획재정부가 권고하였던 채용수준의 20% 수준 내외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표 6> 주요 공공기관 고졸인력 수행 적합 업무 비중¹⁾

(단위: %)

유형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적합비율	17	20	32	13	13

주: 1)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이 제시한 고졸적합 직무비중이 직무분석을 근거로 한 경우가 35%, 경험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는 56%, 그리고 직무분석과 경험적 판단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9%이었음.

주요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시설관리, 관광, 에너지/전력, 건설교통, 검사/심사/평가, 의료, 교육, 금융,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잠재적으로 고졸인력 수요가 많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분야가 확연히 구분된다.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과 같은 시설관리형 기관들은 고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비중이 높은 반면, 한전KDN, (주)한국기업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업무가 핵심인 기관들은 신규채용 시 고졸인력 수요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기관의 핵심 업무성격에 따라서 신입 고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비중에 차이가 있으나, 전력·에너지산업과 같이 기술인력 수요가 많은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고졸 직무로 인식하고 있는 기능 및 직무들은 행정지원, 서무, 회계, 고객지원, 시설관리, 전산업무로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공공기관이 고졸

8) 발전자회사들의 노동생산성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기관별 고졸인력 비중의 차이와 노동생산성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없음.

적합 직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고졸 직무 분야로 인식되었던 단순사무보조나 회계업무가 일반적이다.

3. 직무 기반의 채용환경 강화 필요성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를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학력제한 철폐의 부작용으로 취업경쟁에서 잃어버렸던 고졸인력의 설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고졸 적합 직무발굴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무내용과 역량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사관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해진다. 고졸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발굴할수록 이들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과거 학력제한 철폐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들의 하향지원으로 고졸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하향지원한 상당수 고학력자들이 직무의 단순성과 낮은 임금 및 보상수준으로 업무동기가 저조하였다는 점이다. 즉, 고졸 적합 직무의 발굴을 통해 개인의 역량수준과 담당직무 간의 미스매치(mismatch)로 발생하는 비능률을 방지하여야 한다. 직무성격과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채용시험과 평가점수만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내부의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고졸인력과 고학력인력을 대상으로 전체 능력과 역량에 따른 선발과 배치,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보상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일직무·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이다.

여전히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것인가,
고졸채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4. 고졸채용 확대에 따른 쟁점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조직의 기능 중에서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왔기 때문에 고졸채용 직무개발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여전히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것인가, 고졸채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 밖에도 고졸인력 채용이 확대되면서 논의되는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인력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고졸자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고졸채용이 확산되자,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 아직 졸업하지 않은 구직자들이 취업 이후 자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과거 학력제한철폐가 오히려 고졸인력의 취업을 힘들게 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제도의 본질과 정책취지를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 고졸인력의 정의는 고졸 채용규모를 추적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취업현장에서는 고졸인력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따라 구직자들의 이해관계가 변화 때문에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

둘째, 고졸인력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 퇴직하는 등 재

고졸채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고졸채용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직기간이 짧고 이직률 높다는 인식이 있어 채용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군 복무기간 동안 업무 단절이 발생하여 입대 이전 기간 동안 인력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장기간 대졸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한 기관에 고졸인력들의 조직적응과 융합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고졸과 대졸인력 사이에 학력 및 연령의 차이가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넷째, 고졸인력 채용 이후 역량개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기관들이 많지 않다. 고졸인력 대부분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고졸인력의 대학진학은 장기적으로 기관의 조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졸인력의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에 대한 인력관리 체계화 작업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단순직무 수행 이외에는 운용에 한계가 있어 고졸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졸인력에 비해서는 직업경력의 첫 단계를 20세 이전부터 시작하는 고졸인력의 초기 역량개발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지만, 대졸인력보다 더 오랜 기간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교육훈련과 역량개발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loyalty)과 성과(performance)에 기여할 수 있다.

IV. 맺음말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졸채용 확대는 이들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형평적인 차원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고졸인력의 피해를 바로잡는다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인력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부정적 입장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촉발된 고졸채용이 민간기업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고졸채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고졸채용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현재 고졸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도 역차별도 아닌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력관리를 통해 인력수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과 능력에 따라 배치하고 직무수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이상 자격을 갖춘(overqualified)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성취동기를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공정성을 전제로 채용, 배치, 평가, 보상, 승진과정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고졸채용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현실에서 고졸채용 확대와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정책취지가 상반되어 있다. 고졸채용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계고 등 교육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유지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적 차별을 통한 공정한 인력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가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학력과잉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것이며, 정부정책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고졸채용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사관리협회, 『인사관리』 Vol. 272, 2012.4.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OECD 통계, <<https://www.oecd.org/>>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참고문헌〉

김동원 외, 『기업체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의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김세움 · 김진영 · 조영준,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0.

김유선 외,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09.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 수요 조사」, 2011.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2012.

삼성경제연구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2012.

삼양사, 「삼양사 직무급 인사체계」, 2002.

양훈모 외, 『전략적 인사관리론』, 대경출판사, 2006.

윤형한 외, 「고졸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취업실태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울산광역시교육청)』, 2012.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 형태 다양화 시대의 인력관리』, 1995.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I. 서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ng@kipf.re.kr)

본고는 가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를 세부담의 형평성(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향후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필요성 또는 가능성·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걸쳐 서유럽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각국의 표준세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부분 면세제도와 경감세율제도를 병행적으로 시행하였다. OECD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동향을 살펴본 결과, 표준세율은 지난 40여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평균 20%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유럽에서의 부가가치세 변화를 OECD의 공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유형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2011 A,B,C)에 의하면, 최근 OECD 각국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면세범위를 축소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경향이 짙다.¹⁾ 프랑스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한국 포함)는 면세범위를 축소하였고, 슬로베니아는 경감세율(6%)을 폐지²⁾하고 표준세율로 환원하였다.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경감세율도 함께 상향조정하였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³⁾ 그밖에 스위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사회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를 인상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근로유인(work incentive) 개선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⁴⁾

1) OECD(2011 A)의 7쪽 각주 3번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경감세율의 폐지는 최근 결정된 내용이다. 본고의 <표 6>에서 보듯이 2011년 12월말에는 슬로베니아의 경감세율은 8.5%였다.

3) 자세한 내용은 OECD(2011 B) 14~16문단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자세한 내용은 OECD(2011 C) 18문단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밖에 OECD의 재정위원회(CFA)의 제2조세작업반(WP2)에서는 제9조세작업반(WP9)과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증세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에 부가가치세의 귀착(incidence)과 자원배분 효율성 문제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한다⁵⁾. 이는 최근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세율인상 시에 예상되는 정책파급 효과와 득·실을 비교형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OECD에서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빈번하게 상향조정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증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증대를 종합한 정책조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순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OECD에서는 개인·법인소득세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세원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소득분배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꾸준히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당시의 세율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기초가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말고도 소득세, 환경세 등의 측면에서 아직 증세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물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향후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상승 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물가와 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율 조정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된다. 세율인상은 곧 가격 인상을 의미하므로 물가상승 압박에 대한 효과는 자명하다.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향후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또는 복지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짙다. 그 배경에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효과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세 증세의 결과가 결코 역진적이지는 않다는 점이 OECD 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역시 향후에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압박을 받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계속 고집하기 어렵게 될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은 과학적인 근거를 둔 것은 아니며, 서구 선진국에서 부가가치세 부담구조가 역진적이므로 우리

5) OECD(2011 D)를 참조하기 바란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세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면세범위 축소 등의 요인에 의한 것도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소득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라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부담구조를 직접 측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구조가 어떠한지, 세율 인상을 통해 증세 및 그에 연계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부담·수혜의 결합분포에 기초하여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면서,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조정 시 예상되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즉,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세수추이와 부담·수혜분포

1. 부가가치세의 세수추이

우리나라의 국세 세수는 2006년 138.0조원에서 2010년 177.7조원으로 4년 사이에 28.8%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6.5%(기하평균 기준)에 이른다.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2006년 38.1조원, 2008년 43.8조원, 2010년 49.1조원에 이르며,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2006~2010년 동안 부가가치세의 국세 비중은 25.3~28.6%,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 비중은 20.0~22.4%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세목별 세수추이

(단위: 조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세	138.0	161.5	167.3	164.5	177.7
소득세	31.0	38.9	36.4	34.4	37.5
법인세	29.4	35.4	39.2	35.3	37.3
상속증여세	2.4	2.8	2.8	2.4	3.1
부가가치세	38.1	40.9	43.8	47.0	49.1
개별소비세	4.9	5.2	4.5	3.6	5.1
증권거래세	2.5	3.5	2.8	3.5	3.7
인지세	0.6	0.6	0.6	0.5	0.5
과년도수입	2.6	3.0	3.8	6.9	4.4
교통세	9.6	11.5	11.9	10.1	14.0
관세	6.9	7.4	8.8	9.2	10.7
교육세	3.4	3.9	4.2	3.8	4.6
종합부동산세	1.3	2.4	2.1	1.2	1.0
주세	2.4	2.3	2.8	2.8	2.9
농특세	3.0	3.8	3.8	3.8	3.9
지방세	41.3	43.5	45.5	45.2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GDP 대비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2010년 4.4% 수준이다. 1980년에는 그 비율이 3.8%였으나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세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면세범위가 축소 등의 요인에 의한 것도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소득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은 대체로 생활필수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면세품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반면에 과세품의 경우에는 상당수 사치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면세품보다

과세품의 소비증가율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곧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⁶⁾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은 시계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증가율이 경상GDP 증가율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부가가치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즉, 호주,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낮다. GDP 대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세율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민간소비지출이다.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수와 민간소비지출을 각각 분자와 분모로 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⁷⁾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은 11.8%(2010년 기준)로 타국과의 명목세율 차이를 감안해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약 민간소비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로 무차별적으로 과세된다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우리나라의 경우 10%)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면세제도 또는 복수세율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표준)세율과 차이가 있다. 일례로 만약 면세효과가 크다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면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되는데(보다 정확히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가 넓어 면세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만,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가 면세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 부담세액을 계산함), 면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만 면제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구매지출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면세품이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과세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단계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해져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이 명목세율보다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를 두고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가 넓어 면세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만,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가 면세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세수÷민간소비지출)은 명목세율(10%)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⁸⁾

6) 1978~2010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세수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오차항의 자기상관성으로 인해 Cochrane-Orcutt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ln D(VAT) = -4.825 + 1.377 \cdot \ln D(GDP) - 0.290 \cdot \ln D(\text{설비투자}) - 0.637 \cdot \ln D(\text{수출}) + 0.610 \cdot \ln D(\text{수입})$$

$$(-19.415)(10.277) \quad (-3.309) \quad (-6.408) \quad (6.943)$$

그 결과 부가가치세수의 조탄력성은 1.061으로 추정된다.

7) 민간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을 C-efficiency라고도 한다.

8)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의 박명호 박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징노력 수준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2〉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중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0.0	0.0	0.0	0.0	3.4	3.6	3.9	3.9	3.8	3.9	3.8	3.7	3.4	3.6	..
오스트리아	7.8	8.6	8.2	7.7	8.1	8.1	8.2	8.0	7.9	7.9	7.6	7.7	7.8	8.1	8.0
벨기에	7.0	7.0	6.9	6.7	7.2	6.9	7.0	6.8	7.0	7.1	7.2	7.0	6.9	6.9	7.1
캐나다	0.0	0.0	0.0	3.0	3.3	3.3	3.5	3.5	3.4	3.4	3.2	3.0	2.7	2.7	3.5
칠레	7.7	8.1	8.0	8.2	8.2	8.3	8.1	7.4	7.9	8.9	7.8	8.1
체코	6.0	6.2	6.1	6.0	6.1	7.0	6.9	6.4	6.3	6.8	6.9	7.0
덴마크	9.6	9.3	8.5	9.4	9.5	9.6	9.6	9.6	9.7	10.0	10.3	10.4	10.0	10.1	9.8
에스토니아	9.6	8.4	8.2	8.4	8.2	7.7	8.7	9.1	8.9	7.9	9.1	8.6
핀란드	6.2	7.3	8.4	7.9	8.2	8.0	8.1	8.6	8.5	8.7	8.7	8.4	8.4	8.7	8.5
프랑스	8.4	8.4	7.7	7.4	7.4	7.2	7.1	7.1	7.2	7.4	7.3	7.2	7.1	6.8	7.0
독일	5.6	5.3	5.3	6.5	6.9	6.6	6.4	6.4	6.3	6.3	6.4	7.0	7.1	7.5	7.3
그리스	0.0	0.0	6.5	6.4	7.3	7.6	7.7	7.0	6.8	6.9	7.1	7.4	7.3	6.4	..
헝가리	7.4	8.8	8.2	7.8	8.2	8.9	8.4	7.6	8.1	7.8	8.6	8.6
아이슬란드	0.0	0.0	8.8	9.3	10.6	9.4	9.4	9.7	10.4	11.1	11.3	10.5	9.1	8.0	8.4
아일랜드	4.6	7.1	6.8	6.9	6.9	6.3	6.7	6.7	7.2	7.4	7.6	7.5	7.1	6.4	..
이스라엘	8.6	7.8	7.9	8.6	8.5	8.1	8.0	7.7	7.8	7.8	7.7	..
이탈리아	4.6	4.9	5.6	5.5	6.5	6.2	6.2	5.9	5.8	5.9	6.2	6.2	5.9	5.7	6.2
일본	1.3	1.5	2.5	2.5	2.5	2.5	2.5	2.6	2.6	2.5	2.5	2.6	..
한국	3.8	3.4	3.6	3.6	3.8	4.0	4.4	4.4	4.2	4.2	4.2	4.2	4.3	4.4	4.4
룩셈부르크	3.7	4.4	4.2	4.5	5.2	5.5	5.5	5.5	5.9	6.0	5.7	5.6	5.8	6.3	6.0
멕시코	2.3	2.5	3.3	2.6	3.1	3.3	3.2	3.4	3.3	3.5	3.7	3.6	3.8	3.4	3.9
네덜란드	6.8	6.9	7.1	6.5	6.9	7.3	7.2	7.3	7.3	7.5	7.4	7.5	7.3	7.0	..
뉴질랜드	0.0	0.0	8.3	8.4	8.4	8.4	8.7	9.0	8.8	8.8	9.0	8.3	8.5	8.8	..
노르웨이	7.7	7.8	7.7	8.7	8.4	8.4	8.5	8.2	8.0	7.8	7.9	8.2	7.2	7.9	8.0
폴란드	6.2	6.9	6.8	7.2	7.1	7.0	7.6	8.0	8.2	7.9	7.3	..
포르투갈	0.0	0.0	5.2	6.9	7.6	7.5	7.6	7.7	7.7	8.4	8.6	8.5	8.4	7.1	7.8
슬로바키아	8.4	7.0	7.2	7.0	7.5	7.8	7.9	7.5	6.7	6.9	6.7	6.4
슬로베니아	0.0	8.7	8.3	8.6	8.6	8.5	8.6	8.5	8.4	8.5	8.4	8.4
스페인	0.0	0.0	5.1	5.1	6.0	5.8	5.7	5.9	6.0	6.2	6.3	6.0	5.2	4.0	5.4
스웨덴	6.2	6.6	7.8	9.2	8.7	8.7	8.8	8.8	8.8	9.0	9.0	9.0	9.3	9.6	9.7
스위스	0.0	0.0	0.0	2.4	3.9	4.0	3.9	3.9	3.9	3.9	3.9	3.7	3.7	3.7	3.7
터키	..	2.6	2.7	4.1	5.8	6.0	6.4	6.5	5.5	5.3	5.5	5.1	4.9	4.9	5.7
영국	5.1	5.9	6.0	6.5	6.6	6.6	6.6	6.8	6.8	6.7	6.6	6.5	6.4	5.7	6.6
미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아래 자료 출처에서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저자가 계산

2. 캐나다는 연방정부세만 포함

자료: 부가가치세수—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GDP—data extracted on 02 Apr 2012 06:48 UTC (GMT) from OECD.Stat

〈표 3〉 OECD 국가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중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 주	0.00	0.00	0.00	0.00	0.00	7.80	9.25	9.33	8.00	6.80	6.71	6.63	5.85	5.16	6.02	..
오스트리아	11.53	12.24	13.68	14.56	15.89	17.90	17.97	17.90	14.67	13.44	13.20	13.22	12.30	11.87	12.69	13.18
벨 기 예	10.80	11.03	12.53	12.24	13.85	16.42	16.17	16.07	12.97	12.14	12.32	12.76	11.41	10.51	11.10	11.91
캐 나 다	5.96	5.99	6.50	7.32	7.42	7.26	7.60	7.81	7.00	6.49	6.16	5.43	4.83	4.14	4.46	5.05
칠 레	20.32	21.60	19.70	20.78	22.40	24.07	27.86	30.50	29.53	26.43	23.46	19.88	20.30	21.41	19.78	17.92
체 코	31.77	29.86	29.80	27.24	31.01	33.80	33.20	28.42	25.05	26.31	24.95	22.38	20.38	17.27	19.64	19.28
덴 마 크	12.43	13.25	15.22	15.35	16.31	19.26	19.94	19.25	15.58	14.40	14.52	15.23	14.15	13.30	14.02	14.46
에스토니아	42.23	35.21	37.66	29.32	29.03	37.01	35.00	33.66	27.52	23.13	25.60	25.78	22.17	18.25	24.47	25.25
핀 란 드	12.01	12.26	14.74	14.77	15.49	18.15	17.82	17.15	14.53	13.70	13.86	14.11	12.90	12.09	12.66	12.89
프 랑 스	10.53	11.25	12.98	13.06	13.59	15.32	15.63	14.90	11.89	10.91	11.21	11.32	10.40	9.71	9.80	10.75
독 일	9.01	9.15	10.18	10.42	11.24	13.02	12.91	12.24	10.34	9.50	9.81	10.34	10.87	10.49	11.29	11.65
그 리 스	13.27	12.86	14.44	14.03	15.43	15.93	17.17	16.87	12.70	11.17	10.72	11.02	10.32	9.46	8.90	..
헝 가 리	23.21	24.34	28.08	28.83	30.40	35.41	32.83	26.51	22.13	21.11	19.26	18.60	16.96	15.61	20.52	21.13
아이슬란드	14.53	14.55	16.15	16.70	16.75	16.40	18.27	17.19	13.80	13.61	11.88	12.70	10.37	12.75	15.35	14.95
아일랜드	12.31	13.10	14.14	14.78	14.78	15.90	15.33	15.02	12.75	12.71	13.09	13.56	12.25	9.99	9.60	..
이스라엘	17.06	17.02	17.35	17.64	18.76	18.16	17.78	21.08	19.62	18.95	17.83	17.38	16.28	13.85	14.68	..
이탈리아	9.50	9.34	10.30	11.30	11.22	14.50	14.72	13.37	10.46	9.28	9.44	10.19	9.49	8.79	8.75	9.78
일본	1.41	1.70	2.60	3.58	3.27	3.10	3.57	3.84	3.64	3.64	4.00	4.32	4.39	3.86	3.63	..
한 국	8.53	7.91	9.61	11.89	11.07	10.64	12.08	12.57	11.94	11.43	10.07	9.48	9.33	10.94	12.96	11.80
룩셈부르크	8.70	9.10	10.48	10.98	12.41	15.54	15.83	15.73	13.72	13.92	15.09	15.55	14.73	13.46	14.48	14.71
멕시코	9.02	8.68	8.57	8.52	8.31	7.98	7.63	7.44	7.99	7.86	7.93	8.60	11.10
네덜란드	11.28	11.65	12.80	13.18	14.24	16.64	17.87	16.93	13.95	13.07	13.82	14.37	13.84	12.94	13.06	..
뉴질랜드	19.33	21.66	23.89	22.01	17.83	15.23	13.97	16.26	13.00	13.96	16.13	..
노르웨이	12.33	12.84	14.00	14.65	16.21	18.70	18.88	16.28	13.71	13.42	13.42	14.40	13.39	12.06	12.92	12.57
폴란드	23.08	24.06	27.31	24.35	26.99	25.55	22.99	24.04	22.91	21.31	20.64	21.49	20.60	16.81	20.27	..
포르투갈	13.87	14.61	14.97	15.32	16.29	18.65	18.69	18.11	15.30	13.61	15.30	15.83	14.35	13.12	12.11	13.77
슬로바키아	32.98	35.91	38.51	34.67	28.99	25.41	25.02	23.29	18.12	16.11	15.41	15.71
슬로베니아	26.52	26.47	26.25	21.52	20.43	20.79	21.21	18.87	17.61	17.81	17.57
스페인	9.49	9.72	11.08	11.52	12.78	14.83	14.72	14.19	11.99	11.00	11.32	11.87	10.55	8.57	7.17	9.72
스웨덴	14.75	12.87	14.78	15.53	16.09	17.95	20.09	19.21	15.71	14.77	14.89	15.61	14.73	14.85	16.78	16.07
스위스	2.45	3.47	4.26	4.34	5.00	6.07	6.00	5.65	4.89	4.60	4.65	5.02	4.92	4.60	4.49	4.46
터키	13.86	14.06	18.28	25.13	23.27	17.58	13.52	11.94	13.03	10.86	10.30	11.66	12.36
영국	10.35	10.48	10.03	9.57	9.89	10.71	11.03	10.69	9.95	9.07	8.90	8.96	7.96	8.29	8.60	9.87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1995-2012

상당수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가 역진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가 대체로 소득에 대해 중립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계층별 분포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절대세부담 분포와, 실효세부담률 분포를 추정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와, 증세에 따른 지출효과까지 포함한 순효과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분포도 함께 고찰해보아야 한다.

조세부담과 수혜분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베이 조사자료에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세부담 내역이 조사되지만, 누락된 경우가 많고 신뢰성도 낮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각의 내역을 직접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상기의 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성명재·박기백(2008)과 Jones(2006)에서 채택하였던 연구방법을 원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에 담긴 각종 소득 및 항목별 소비지출 정보와 인적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별(소득세, 교육·보육급여) 또는 가구별(부가가치세, 주택급여)로 세부담 또는 혜택수준을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자 인별로 소득종류별 소득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양가족 수, 소비지출에 기반한 각종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에 적용시켜 결정 세부담을 산출하고 가구별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비지출 세부항목별로 면세/과세 여부를 판정하여 과세분 소비지출의 1/11을 세부담으로 산정하여 추정하였다. 교육·보육급여는 가구 구성원 중 학생 및 영유아를 기준으로 머릿수당 평균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영유아보육급여의 경우 일부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통제하였다. 주택급여는 주택대출이자지급 정보와 소득기준, 소유주택의 면적 등 주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별로 적용대상을 산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4〉는 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부가가치세 증세 시 그와 연계된 재정지출 증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영유아보육·주택급여에 대한 혜택 분포도 함께 추정하여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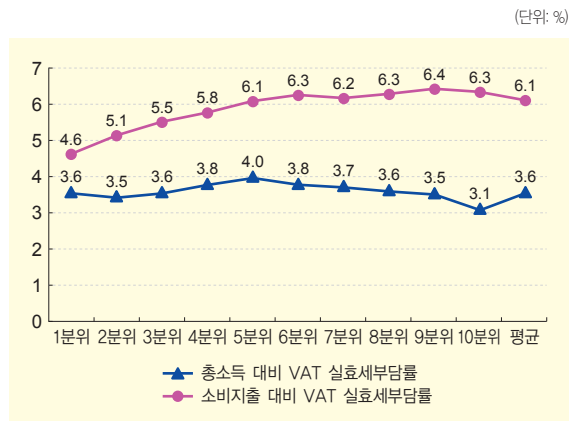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뒤죽박죽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당수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가 역진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가 대체로 소득에 대해 중립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의 구성 차이와 면세범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서구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아 저소득층에 귀속된다. 한편 이들은 각종 연금소득과 생애 동안 축적한 저축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은퇴자 위주의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퇴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으며, 향후에도 당분간은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인구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대부분 은퇴가구들로 구성되는 먼 장래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구조도 역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분포 구조의 현황을 상세히 살펴본다. 2010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소비지출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5분위에서 4.0%로 가장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수평에 가깝다. 비록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3.1%여서 다른 분위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보면 부분적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관찰되지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에 대해 비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구조가 소득에 대해 중립적인 분포를 가짐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 [그림 1] 참조).

2010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소비지출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5분위에서 4.0%로 가장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수평에 가깝다.

[그림 1]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분포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추정치)



주: 저자 추정치 기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 또는 수혜전·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표 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2010년 기준으로 0.14% 상대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세전·세후소득 지니: 0.32274→0.32324)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세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정도의 효과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실상 0이라고 볼 수 있다. 성명재(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기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정(+)에서 부(-)로 변화무쌍하다. 다만 절대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

〈표 4〉 소득계층별 소득 및 주요 세목별 부담 분포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배)

	1분위 (A)	2분위 (B)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C)	10분위 (D)	평균	상대비	
												10분위배수 (D/A)	5분위배수 (C+D/A+B)
시장소득	5,537	12,062	18,570	24,179	30,623	35,685	43,370	51,097	62,097	91,516	37,471	16.5	8.7
민간소득	6,745	13,960	20,282	26,188	32,102	37,666	44,795	52,564	64,199	94,730	39,320	14.0	7.7
총소득	8,494	16,109	22,102	28,080	33,750	39,511	46,349	54,453	65,957	96,099	41,088	11.3	6.6
소득세	15	68	195	318	552	726	1,228	1,816	2,723	6,358	1,400	423.9	109.4
재산세	46	80	81	110	118	156	134	201	270	406	160	8.8	5.4
가처분소득	8,186	15,541	21,036	26,509	31,500	36,779	42,759	49,725	59,593	84,746	37,635	10.4	6.1
부가가치세	303	556	791	1,069	1,353	1,502	1,731	1,982	2,330	3,001	1,462	9.9	6.2
개별소비세	26	51	59	88	130	135	146	171	228	285	132	11.0	6.7
교통에너지환경세	35	99	186	338	394	474	551	601	716	887	428	25.3	12.0
주세	12	16	25	25	32	32	34	34	35	40	29	3.3	2.7
담배세	51	78	94	112	120	113	116	141	133	121	108	2.4	2.0
소비세계	427	800	1,154	1,632	2,030	2,257	2,578	2,929	3,442	4,334	2,158	10.1	6.3
세후소득	7,759	14,742	19,882	24,878	29,471	34,522	40,182	46,796	56,151	80,412	35,477	10.4	6.1
교육수혜	177	879	1,162	1,797	2,293	3,085	3,588	3,430	3,591	3,782	2,378	21.4	7.0
보육수혜	39	68	101	87	96	84	66	20	6	0	57	0.0	0.1
주택수혜	14	22	20	39	20	8	3	7	0	0	13	0.0	0.0
최중소득	10,309	17,607	22,869	28,493	33,526	39,334	45,490	51,904	61,418	85,959	39,689	8.3	5.3

주: 저자 추정치

색상 처리된 부분은 소득종류별 소득, 회색은 부가가치세를 나타냄.

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평균적으로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수규모는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는 매우 작다. 그 이유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역진도의 절대값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즉, 세부담이 거의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표 5〉 소득종류별 지니계수 및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지니%)

소득종류	지니계수	전단계 대비 지니계수 증분	재분배 항목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 변화율)
시장소득	0.36585			
총소득	0.33646			
총소득-소득세	0.32598	-0.01048	소득세	-2.97
가처분소득	0.32274	-0.00014		
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0.32324	0.00050	부가가치세	0.14

주: 저자 추정치

음수(-)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양수(+)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냄.

Ⅲ. 부가가치세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7월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현재 5%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훨씬 더 높다.

최근 OECD 재정위원회의 제2작업반(WP2) 등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복지지출 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OECD(2011 C)에 의하면 많은 국가(예: 스위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그리스, 핀란드 등 OECD, 2011, A, B, C 참조)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율인상, 면세범위 축소,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인상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분포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증세(세율인상) 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원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⁹⁾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가가치세 증세에 의한 부(-)의 효과를 중화 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 등의 과중한 부담이 근로의욕(work incentive)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곡현상을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기도 한다. 아울러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소득세의 세원분포가 협소해지므로 누진과세에 따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른 자원배분 왜곡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점은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가가치세의 세율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각각 25%와 2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책조합의 순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거나 최소한 음(-)의 값을 가지지 않아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과세·재산과세 강화만으로는 세원확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득과세의 경우 노동공급의사결정 왜곡 등 자원배분 왜곡을 통해 시중손실로 인한 경제적 비용손실이 크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과세의 세원분포가 협소해지면서 재정세입 기반 역시 위축된다. 반면에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세원분포가 넓고 조세왜곡이 작으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세원확보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억제를 통한 저축률 상승과 그에 기반한 투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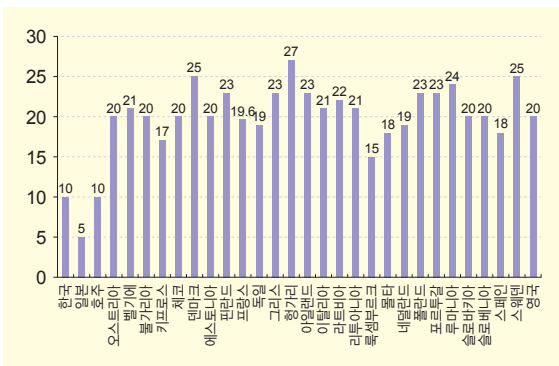
9) 영국 통계청(ONS, 2012)은 서베이분석을 통해 영국의 부가가치세 부담 구조가 역진적임을 밝혔다. OECD(2011 A, B, C)는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가가치세의 세율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각각 25%와 2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및 잠재성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등의 거시경제적 장점도 있다.

[그림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교(2012년 현재)

(단위: %)



주: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12월.
www.worldwide-tax.com
 KOTRA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International VAT and IPT Services <http://www.tmf-vat.com>
 World Tax Rates 2012 <http://world.tax-rates.org>

<표 6>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2011년 기준)

(단위: %)

	표준세율	경감세율
한국	10	-
일본	5	-
호주	10	-
오스트리아	20	10
벨기에	21	12
불가리아	20	9
키프로스	17	8
체코(2013.1.1부터 17.5%로 통합 예정)	20	14
덴마크	25	-
에스토니아	20	9
핀란드	23	13
프랑스	19.6	5.5
독일	19	-
그리스	23	13
헝가리	27	18
아일랜드	23	13.5
이탈리아	21	10
라트비아	22	12
리투아니아	21	9
룩셈부르크	15	12
몰타	18	5
네덜란드	19	6
폴란드	23	8
포르투갈	23	13
루마니아	24	9
슬로바키아	20	10
슬로베니아	20	8.5 ¹⁾
스페인	18	8
스웨덴	25	12
영국	20	5

주: 1. OECD(2011 B)에 의하면 최근 슬로베니아는 8.5%의 경감세율을 폐지하였다고 함.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12월.
www.worldwide-tax.com
 KOTRA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International VAT and IPT Services <http://www.tmf-vat.com>
 World Tax Rates 2012 <http://world.tax-rates.org>

IV. 부가가치세율 조정시의 기대효과

1. 부가가치세 및 재정지출 정책조합의 소득재분배 효과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형평효과는 그 자체로만 평가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분포가 소득분포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모습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막연히 역진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자료분석을 통해 예측되는 결과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반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담배세 등 당장의 증세 여력이나 증세 필요성이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타 세목의 증세 여력이 허락하는 장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문제를 논함에 있어 복지지출과의 결합을 통한 결합분포 및 순효과에 기초를 둔 소득재분배 효과의 고찰은 매우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여타 세원에 대한 증세도 대안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증세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여타 세목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결과를 비교해 본다.

본절에서는 성명재·박기백(2008)의 연구 등에서 채택한 방법을 원용하여 세수를 1조원 증세하거나, 주요 재정지출 항목의 지출 규모를 1조원 확대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적인 부담·수혜 분포를 추정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년 현재 세수규모가 49.1조원 이므로 1조원의 증세는 약 0.2%p 정도 세율이 인상되

정책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증세 및 복지지출 확대 시 순부담이 음(-)의 값을 가지는 범위는 주로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고소득분위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현재 인구는 49,410,366명이고 평균가구원수는 2.87명이므로 가구수는 1,721.6만가구로 추정된다. 총액 1조원을 가구수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금액은 58,085원이 된다. 가구당 세부담 또는 지출을 평균적으로 58,085원씩 증가시키면 특정 세목이나 특정 재정지출을 1조원씩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부가가치세를 1조원 증액하는 경우와, 예를 들어, 지출 측면에서 교육 또는 보육, 주택급여를 1조원 확대하는 경우의 수혜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순수혜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증세 및 재정지출 증대시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수혜의 범위가 넓을수록 순수혜 계층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순수혜계층의 범위가 넓을수록 잠재적으로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증세 및 복지지출 확대 시 순부담이 음(-)의 값을 가지는 범위는 주로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고소득분위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혜 계층의 포괄범위가 대체로 전 계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증세가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정책조합의 순효과는 부정적이지 않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으며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정책조합의 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 증세(세율인상 시) 그 자체로는 미소하게나마 소득재분배 효과가 음(-)의 값을 가지지만 재정지출 방안과 연계하여 순효과를 보면 미미하지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를 1조원 증세하면 세후지니계수는 0.32334에서 0.32337로 0.00003지니p 상승하여 매우 미미하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증세된 세입을 교육이나 보육, 또는 주택급여에 충당하여 지출할 경우 오히려

최종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감소효과)는 증세 전 지니계수 대비 각각 0.00002지니p, 0.00085지니p, 지니p, 0.00106지니p씩 감소하여 정(+)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 <표 9> 참조).

위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증세 및 복지지출(예: 교육·보육·주택급여) 확대 시에 예상되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 크기는 상당히 작아 거의 0에 가깝다. 그런 효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득분배격차는 0.009%라는 매우 미미한 정도로 확대된다. 한편, 재정지출까지 고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양(+)으로 반전된다. 물론 그 정도는 0.006~0.33%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표 5>에서 보듯이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2.97%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통해 적극적 의미에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려와 달리 소득분배 구조에 부

<표 7> 1조원 증세·재정지출 확대시 가구당 부담·수혜 평균 분포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부담·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가치세	12,038	22,090	31,426	42,471	53,754	59,674	68,772	78,744	92,570	119,229	58,085
교육	4,323	21,470	28,383	43,893	56,009	75,354	87,640	83,781	87,714	92,379	58,085
영유아보육	39,742	69,294	102,923	88,656	97,827	85,599	67,256	20,381	6,114	0	58,085
주택	62,553	98,298	89,362	174,255	89,362	35,745	13,404	31,277	0	0	58,085
순부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세-교육	7,715	619	3,043	-1,422	-2,254	-15,680	-18,868	-5,037	4,857	26,850	0
부가세-보육	-27,704	-47,205	-71,496	-46,185	-44,073	-25,925	1,516	58,364	86,456	119,229	0
부가세-주택	-50,515	-76,208	-57,935	-131,784	-35,607	23,930	55,368	47,468	92,570	119,229	0

주: 저자 추정치 기준

색상 처리된 부분은 소득종류별 소득, 회색은 부가가치세를 나타냄.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증세재원을 복지재정 지출에 투입하는 경우 최소한 소득분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표 8〉 1조원 증세·재정지출 확대 정책조합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소득 종류	지니계수
시장소득(MY)	0.36585
총소득(GY)	0.33646
가처분소득(DY)	0.32274
DY-VAT	0.32334
DY-VAT(1조원 증세시)	0.32337 (+0.009%)
DY-VAT(1조원 증세시)+교육지출 1조원 확대	0.32332 (-0.006%)
DY-VAT(1조원 증세시)+보육지출 1조원 확대	0.32249 (-0.263%)
DY-VAT(1조원 증세시)+주택지출 1조원 확대	0.32228 (-0.328%)

주: 1. 저자 추정치

2. () 안의 수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공제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0.32334)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나타냄. 이 수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백분위로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V. 결론

각 세목의 누진도·역진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기준으로 세제개편을 논하면 세부담이 역진적이거나 중립적인 세목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과 지출을 연계하지 않고 부담과 지출을 별개로 논의하므로 세부담이 역진적인 세목의 경우 증세방안 또는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세입원으로서 원천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세입·세출을 종합하여 순효과를 기준으로 정책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복지국가 또는

부가가치세 부담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으나, 추가재원에 의한 지출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순효과는 미미하지만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국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많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복지지출 확충을 위한 재원 및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 확충 시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며, 최소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소득세의 세원확충 여지(과세자·면세자 비율 및 과표양성화 측면)가 있고, 외 부불경제 억제를 위한 소비세제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복지재정 증가추세와 인구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소득과세의 세원분포가 축소될 가능성 등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자체만으로 보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으나, 추가재원에 의한 지출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순효과는 미미하지만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차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진전될수록 은퇴자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먼 장래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구조가 점차 역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생필품 위주로 면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먼 장래에도 역진도는 크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물가압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세부담 구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 등을 대비·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도가 커지더라도 세율이 매우 넓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복지지출 등에 충당할 경우 정책조합의 순효과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 담배세, 주세, 유류세(탄소세) 등 여타 세목에서의 증세 여력 또는 증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크지 않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타 세목에서의 증세 여력이 소진되면 차후의 선택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물가압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세부담 구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세부담의 역진성) 등을 대비·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임박하여 세율인상 방안을 제안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미성숙하고, 부작용(물가상승) 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 노력이 좌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0%의 단순성이 주는 부가가치세제의 간결함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에 있

어 매우 편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0% 세율이 정석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래 10% 세율을 금과옥조처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IPF**

〈참고문헌〉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및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미발표자료, 2012.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통산 제56호), 2008, pp. 63~9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12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Jones, Franci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4/05,” *Economic Trends*, 630, pp. 53–9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6.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Hyslop, D. and S. Yahanpath, *Income Growth and Earnings Variations in New Zealand, 1998–2004*, New Zealand Treasury, 2005.

Jones, F.,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6/07,” *Unpublished Manuscrip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Report on Income Redistribution 2005*, Japan, 2007.

-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Paris, 2008.
- _____, “TPS Project on Intangible Assets: Tax Component of the New Sources of Growth Study,”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CTPA/CFA/WP2(2011)6, 10-May-2011, 2011(A).
- _____, “National Tax Policy Developments: Issues for Discussion and Responses to the 2011 Questionnaire,”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CTPA/CFA/WP2(2011)10, 05-May-2011, 2011(B).
- _____, “Tax and Employment Project,”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CTPA/CFA/WP2(2011)12, 19-April-2011, 2011(C).
- _____, “WP2: 2012-14 Programme of Work,” Working Party No. 2 on Tax Policy Analysis and Tax Statistics,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CTPA/CFA/WP2(2011)32, 04-Nov-2011, 2011(D).
- ON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10-11, 2012.
- Sung, Myung Jae and Ki-baeg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7, No. 2, 2011, pp. 345-363.
-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2005*, 2007.
- U.S. Census Bureau, “The Effect of Taxes and Transfers on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5,” 2007.
- <http://world.tax-rates.org>, World Tax Rates 2012,
- <http://www.worldwide-tax.com>
- <http://www.kotra.or.kr/>, KOTRA홈페이지
- <http://www.tmf-vat.com>, International VAT and IPT Services

2013년 예산안 편성

- '경제활력 ·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 편성
강승준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13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활력 ·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도 예산안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3년 예산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경제활력 ·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 편성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볼 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 급속한 고령화, 통일대비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강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 신인도를 상향조정할 것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확대가 없이는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더욱이 IMF, 한국은행 등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총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지출을 늘리게 되면 재정에 부담을 주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균형재정 목표만 고수하여 경제활성화라는 중요한 재정의 기능을 도외시킬 수도 없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대응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1. 2013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모습

1. 재정총량

’13년 총수입은 ’12년 대비 8.6% 증가한 373.1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당초 ’11~15 계획에 비해 다소(Δ 2.6조원) 줄어든 수치이다. 이렇게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폭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3년 총지출은 '11~'15 계획 대비 0.2%p 확대된, '12년 대비 5.3% 증가한 342.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때 '13년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0.3\%$ 로서 균형재정 기조 내에서 관리가 된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재정총량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전망치 34.0%보다 $\Delta 0.8\text{p}$ 축소된 33.2%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3년 재정총량안

(단위: 조원, %)

	'12년(A)	(증가율)	'13년안(B)	증감	
				(B-A)	(증가율)
• 총수입	343.5	(9.3)	373.1	29.6	(8.6)
- 국세	205.8	(9.7)	216.4	10.6	(5.2)
• 총지출	325.4	(5.3)	342.5	17.1	(5.3)
□ 통합재정수지	18.0		30.5	12.5	
□ 관리재정수지	$\Delta 14.3$		$\Delta 4.8$	9.5	
(GDP대비)	$(\Delta 1.1)$		$(\Delta 0.3)$	(0.8p)	
□ 국가채무	445.2 ¹⁾		464.8	18.9	(4.5)
(GDP대비)	(34.0)		(33.2)	$(\Delta 0.8\text{p})$	

주: 1) '12년 전망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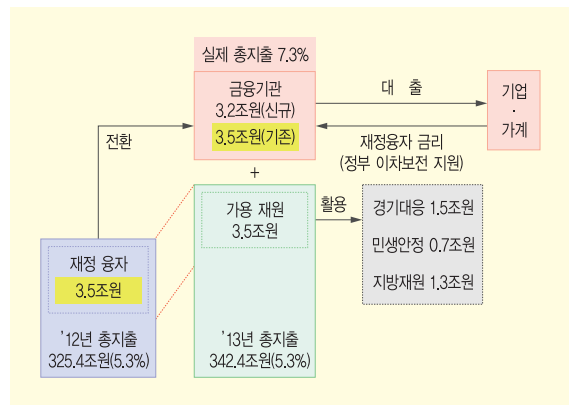
2.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실제 총지출 확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총지출을 금년 대비 5.3%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지만,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수지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확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묘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는 재정용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이나 가계가 재정용자 대신 민간 시중은행

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정부는 이차만 보전하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정용자(재정지출)의 2% 수준 지출로 국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고 이렇게 추가 확보된 재원을 꼭 필요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재정용자 3.5조원 그리고 신규 이차보전 지원으로 3.2조원의 민간용자 창출 등 총 6.7조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총지출 증가율이 2.0%p(5.3→7.3%) 확대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또한 기존 재정용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으로 추가 확보한 재원 3.5조원은 경기대응·민생안정·지방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재정용자의 이차보전 전환



II. 2013년 예산안의 중점

'13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i)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ii)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iii)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iv) 재정의 균사를 뺀 알뜰예산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1.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투자 촉진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5조원 확대(69.5조→78.0조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2조원을 공급한다. 해외투자기업 U턴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을 30조원 확대(270조→300조원)하고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1·'12년도 취득세 감소분과 '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3조원을 지방에 지원한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2조원을 지원한다. SOC 투자는 신설보다는 완공 위주로 지원하고 그 규모는 '12년 23.1조원에서 23.9조원으로 확대한다.

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 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2.5만명 확대한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도 3배 이상(1만→3만명) 확대한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나 사업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도 현실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5천억원(1.75조→2.25조원)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소득 3분위 이하에서 7분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3만명 확대(14만→17만명)한다.

기초수급자 3만명을 추가 보호(140만→143만명)하고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동방범 CCTV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먹거리·교통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 전통·취약 부문의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창조·선도적 R&D,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신성장동력 R&D에 3.5조원, 녹색성장 투자에 21.3조원을 투자하고 문화펀드 출자, 한류확산, 글로벌 제약 M&A펀드 조성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연구역량강화 투자 확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K) 지원 등 대학경쟁력

을 강화하고 선취업·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전통·취약부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소상공인, 가계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계정 신설(1.1조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섬유·금형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보완대책 지원규모를 4천억원 확대(2.1조→2.5조원)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출자(1,200억원), 모기지론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원한다.

4. 재정의 균살을 뺀 알뜰예산

재정운용방식개선, 세출구조조정 추진으로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경기대응·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부문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재정용자지출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재정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3.5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집행부진·성과미흡·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 그리고 보조금, R&D 등 8대 영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3.7조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Ⅲ. 분야별 자원배분

분야별 자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분야가 금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7.9%)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도 복지분야 투자규모는 97.1조원으로 금년 대비 4.8%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차보전 전환분 감안시 '13년 예산규모는 102.6조원으로 그 증가율은 10.8%에 육박한다. '13년 농림분야 투자규모는 18.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를 보이

지만, '13년 완료되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8.2% 증가로 최근 5년간 농림분야 증가율의 2배 이상이 된다.

12대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조원)


구 분	'12년(A)	'13년(B)	(B-A)	%
◆ 총지출	325.4	342.5	17.1	(5.3)
1. 보건·복지·노동	92.6	97.1	4.5	(4.8)
2. 교육	45.5	49.1	3.6	(7.9)
3. 문화·체육·관광	4.6	4.8	0.2	(4.9)
4. 환경	6.0	6.3	0.3	(5.8)
5. R&D	16.0	16.9	0.9	(5.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0.6	(4.1)
7. SOC	23.1	23.9	0.8	(3.6)
8. 농림·수산·식품	18.1	18.3	0.2	(1.2)
(4대강 제외시)	(16.7)	(18.1)	(1.4)	(8.2)
9. 국방	33.0	34.6	1.7	(5.1)
10. 외교·통일	3.9	4.1	0.2	(5.0)
11. 공공질서·안전	14.5	15.0	0.5	(3.2)
12. 일반공공행정	55.1	57.3	2.2	(4.0)
(교부세 제외시)	(22.1)	(21.8)	(△0.3)	(△1.4)

Ⅳ.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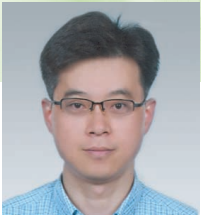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건전한 재정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재정수지를 GDP 대비 △0.3%까지 용인하고, 재정용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정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묘책’이라 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꼼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분명히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지향하는 예산이다.

금년은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는 해이고 내년 예산은 새 정부가 집행하는 첫 예산이다. 아무쪼록 어렵게 마련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심의·확정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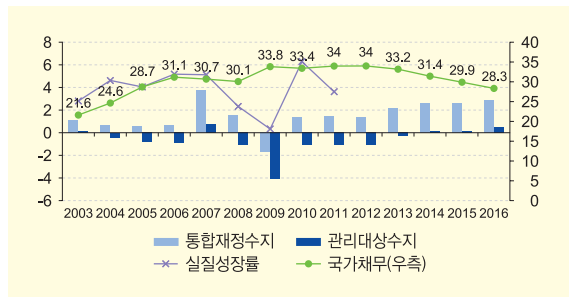
I. 들어가며

지난 9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총 342조 5천억원 규모의 이번 정부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총지출은 5.3%, 총수입은 8.6% 증가한 규모이다.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최근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목표를 제시하면서, 균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2008년 당시,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향했던 정책의 중심에는 감세와 작은 정부가 있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직전 해인 2007년에 관리대상수지가 0.7% 흑자로 돌아섰고 실질 GDP 성장률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5%대에 들어서는 등,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호한 전망을 기초로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을 제시했던 MB 정부의 경제정책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

산을 시작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림 1]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12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과 2009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3%와 0.3%로 하락하면서 정권 초기의 기대치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는 감세 및 지출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9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4.1%로 증가하였고 국가채무

는 30.1%에서 33.8%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쓸린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2009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큰 화두로 대두되었고, MB정부가 '20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정책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선회함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14년 재정수지 균형의 목표를 제시하고, 2010년에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 재정준칙도 도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1년에는 재정균형을 2013년에 조기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2013년 수지균형 목표에 대해 회의적 의견도 끊이지 않았다.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정부의 어려운 고민들을 담아낸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II.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각국의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을 위해 각국은 앞다투어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특히 EU회원국들 중 소위 PIIGS 국가들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금융위기

기간 악화된 재정상황이 오히려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직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온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양호한 국가들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속에서,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은 각 나라들이 조속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1〉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변화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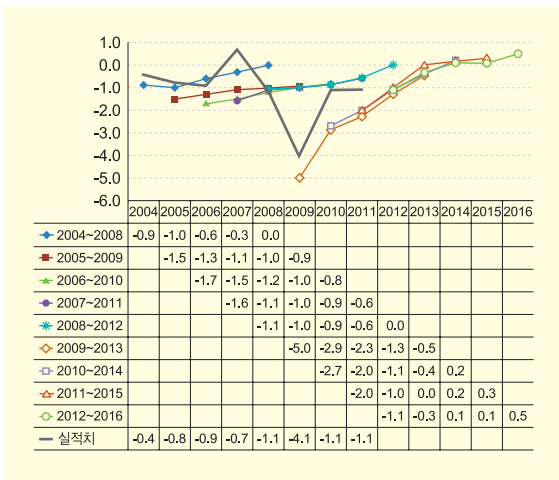
	'12예산		'13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	증가율	'14	'15	'16		
◇ 총수입	343.5	9.3	373.1	8.6	391.1	415.2	439.1
• 예산	234	10.3	253.8	8.4	267.5	285.7	306.5
(국세)	(205.8)	(9.7)	(216.4)	(5.2)	(238.9)	(259.1)	(280.4)
• 기금	109.5	7.1	119.3	8.9	123.6	129.5	132.6
◇ 총지출	325.4	5.3	342.5	5.3	357.5	373.1	389.7
• 예산	228.1	5.4	242.4	6.3	252.7	263.5	275.0
• 기금	97.3	5	100.1	2.8	104.8	109.7	114.7
※ 실제총지출 ¹⁾	325.4	5.3	349.2	7.3			
◇ 관리대상수지 ²⁾	△14.3		△4.8	9.5	1.0	2.2	8.3
(GDP 대비)	(△1.1)		(△0.3)	(0.8p)	(0.1)	(0.1)	(0.5)
※ 통합재정수지	18.1		30.6	12.5	38.6	42.1	49.4
◇ 국가채무	445.9 [445.2] ³⁾		464.8	18.9	470.6	481.2	487.5
(GDP 대비)	(33.3) [34.0] ³⁾		(33.2)	(△0.1p)	(31.4)	(29.9)	(28.3)
• 적자성채무	221		228.7		231.3	234.4	232.2
• 금융성채무	225		236.2		239.4	246.8	255.3

주: 1) 이차보전 전환(6.7조원 포함 시 '13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
2)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수지를 제외)
3) []은 '12년 전말치

우리나라에서 금년 한 해는 지속적인 경기전망의 하락과 함께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시기였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경

제 속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통해 조속히 경기 대응 여력을 확충하고자하는 재정당국의 노력과, 동시에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침체되어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당국의 고민이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실적치



기존의 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약간 완화하기는 하였지만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0.3% 적자라는 거의 균형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5.3%로 동결하고 총수입 증가율은 8.6%로 유지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였다. 국가채무도 464.8조원으로 2012년 예산에 비해 18.9조원이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로 볼 때는 33.2%로 0.1%p 감소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적자성채무의 비중도 2011년 50.5%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49.2%로, 그리고 2016년에는 47.6%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재정수지 총량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5년간의 위기상황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 수준('03~'07년 평균 $\Delta 0.26\%$)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7~8%대 명목 GDP의 증가로 국가채무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드디어 위기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알뜰 예산'을 강조하면서 재정총량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는 목표를 담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예산안의 중점으로 제시된 것은 '튼튼예산(Strong)', '든든예산(Trustworthy)', '활력예산(Energetic)', 그리고 '알뜰예산(Prudent)'의 네 가지로 이것을 '경제'와 '민생'을 향한 큰 발걸음(STEP)이라는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튼튼 예산은 성장동력의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전통·취약부문 체질강화를 담고 있고, 든든예산은 일자리창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활력예산은 내수·수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알뜰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 세출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이슈는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의 일부로 이차보전(interest subsidy)방식의 확대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융자지출 중 국민주택기금(3조원), 중소기업진흥기금(0.3조원), 에너지특별회계(0.2조원)를 통해 3.5조원을 융자지출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3.2조원의 이차보전을 도입하여 총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

고, 용자지원을 이차보전지원으로 전환하여 생기는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5조원), 민생안정(0.7조원), 지방지원(1.3조원)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차보전 방식에서의 전환은 용자대상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심사와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다만 정부의 직접 용자에 비해 대출이 까다로와져 일부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용자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추후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금조성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는 기존 재정용자자금을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총지출을 가용재원보다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차보전 방식에서의 전환은 이미 기존에 많은 주장이 있어 왔던 것으로, 기존에 민간금융시장의 미비로 도입된 재정용자제도가,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권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민간자본을 정부정책에 사용함에 따른 구축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이번 이차보전의 규모가 전체 기업 금융부채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최근처럼 금융권의 여유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경제 전망과 기초

2009년 하반기부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상황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좀처럼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민간이나 연구기관들, 국제기구들도 성장률 전망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의 경우 이번 10월에 발표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지난 7월의 update에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 다시 한 번 하향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내년의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단위: %, %p)

	2010	2011	2012	2013	7월전망과 차이		4월전망과 차이	
					2012	2013	2012	2013
선진국	3.0	1.6	1.3	1.5	-0.1	-0.3	-0.1	-0.5
미국	2.4	1.8	2.2	2.1	0.1	-0.1	-0.1	-0.3
유로지역	2.0	1.4	-0.4	0.2	-0.1	-0.5	-0.1	-0.7
개도국	7.4	6.2	5.3	5.6	-0.3	-0.2	-0.4	-0.4
전세계	5.1	3.8	3.3	3.6	-0.2	-0.3	-0.2	-0.5
한국	6.3	3.6	2.7	3.6	-	-	-0.8	-0.4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04, 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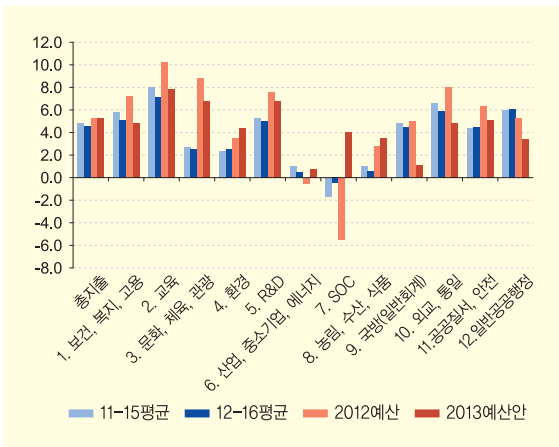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10월 전망에서 지난 7월 전망을 0.6%p 하향 조정하여 2013년 성장률을 3.2%로 제시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9월 3.4%를 제시하여 이전 전망을 0.7%p 하향 조정하였다. 정부도 이런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2013년 4.3% 성장전망을 4.0%로 0.3%p만큼 낮추었다. 하지만, IMF의 3.6%(12.10)나 투자기관들의 전망 평균인 3.6%, 국회예산정책처의 3.5%(12.10)보다는 여전히 0.4~0.5%p 높은 수준이어서 이 전망이 여전히 다소 낙관적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한편, 2013년의 재정기조는 경기변동효과를 제거한 영향을 판단하는 재정충격지수(FI)로 볼 때, 2012년 예산안의 기조(-0.7)와 비슷한 수준인 -0.7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리대상수지는 약 0.75%p가량 하락했지만 경기하락에 따른 경기조정수지의 영향으로 재정충격지수는 그 보다 약간 작은 수준의 상대적 긴축을 나타내고 있다.

2. 세출 전망

앞서 제시한 것처럼, 2013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증가율은 5.3%로 2012년 예산에서의 총지출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이고, 총수입 증가율인 8.6%에 비하면 3.3%p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지출 증가율



분야별로 보면 2013년 예산안에서는 작년에 이어 교육분야(7.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까지의 평균증가율(7.1%)을 보아도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예산안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국방분야(1.1%)이나, 2016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은 4.5%로 총지출 증가율 4.6%에 거의 유사하다. 지난 해의 부문별 지출 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SOC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이 두 분야에서의 2013년 지출증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적 관점에서는 어긋나는 변화로 보인다. 우선 SOC부분은 중기계획에서도, 2012년 예산에서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나, 2012년 예산에서 1.7% 감소한 후 2013년 예산안에서는 갑작스런 3.5%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종료 등으로 '14년 이후로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은 $\Delta 0.5\%$ 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0.5%의 증가율로 SOC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이지만, 2013년 예산안에서는 5.6%의 증가율을 보여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수출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 확산에 대응하고자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내년에 집중되어 발생하게 되었다.

〈표 3〉 2012~1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분	'12	'13	증가율	'14	'15	'16	'12~'16 평균
총지출	325.4	342.5 ^a		357.5	373.1	389.7	4.6
(증가율)	(5.3)	(5.3)		(4.4)	(4.4)	(4.4)	
1. 보건·복지·고용	92.6	97.1	(4.3)	102.1	107.2	112.9	5.1
2. 교육	45.5	49.1	(7.9)	53.2	56.7	59.9	7.1
(지방교육교부금)	(38.4)	(41.0)	(6.8)	(45.3)	(49.1)	(53.1)	(8.4)
3. 문화·체육·관광	4.6	4.8	(4.3)	4.8	4.9	5.1	2.5
4. 환경	5.9	6.3	(6.8)	6.4	6.5	6.6	2.5
5. R&D	16	16.9	(5.6)	17.5	18.2	19.5	5.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4.0)	15.3	15.3	15.4	0.5
7. SOC	23.1	23.9	(3.5)	23	22.7	22.7	△0.5
8. 농림·수산·식품	18.1	18.3	(1.1)	18.5	18.5	18.6	0.6
9. 국방(일반회계)	33	34.6	(4.8)	36.2	37.8	39.4	4.5
10. 외교·통일	3.9	4.1	(5.1)	4.4	4.7	5	5.9
11. 공공질서·안전	14.5	15	(3.4)	15.7	16.5	17.3	4.5
12. 일반공공행정	55.1	57.3	(4.0)	61.6	65.7	70	6.1
(지방교부세)	(33.0)	(35.5)	(7.6)	(39.6)	(43.1)	(46.9)	(9.2)

지출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총지출의 28.5%를 차지하고, 201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연평균 5.1%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총지출의 29%를 차지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공공행정(16.9%)과 교육(14.0%)분야로 두 분야 모두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빠른 증가율로 증가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분야에 있어 지출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때문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60% 정도, 지방교육교부금은 교육분야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분야가 그

뒤를 이어 총지출의 10.1%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중은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총지출에서 가장 큰 세 분야-보건·복지·고용, 일반공공행정, 교육-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는 59.4%에서 2016년에는 62.3%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세 분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여기에 포함된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의무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의무지출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2012-16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 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과 분야별 전망, 그리고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전망을 살펴보면 2012~16기간에 의무지출은 연평균 7.3%, 재량지출은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여,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4.6%의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의 증가에 기인하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46.7%와 53.3%로 재량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로 인해 2015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2016년에는 의무지출이 51.6%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무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에 연동되어 지방에 지급되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이전재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복지분야의 법정지출로 연평균 7.5% 증가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는

85.9%에서 2016년에는 88.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단위: 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
(증가율)	(5.3)	(5.3)	(4.4)	(4.4)	(4.4)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28.1	242.4	252.7	263.5	275	4.8
(비중)	(70.1)	(70.8)	(70.7)	(70.6)	(70.6)	
• 기금지출	97.3	100.1	104.8	109.7	114.7	4.2
(비중)	(29.9)	(29.2)	(29.3)	(29.4)	(29.4)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51.9	160.6	174.3	186.7	201.1	7.3
(비중)	(46.7)	(46.9)	(48.8)	(50.0)	(51.6)	
• 재정지출	173.5	181.9	183.3	186.4	188.6	2.1
(비중)	(53.3)	(53.1)	(51.2)	(50.0)	(48.4)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71.5	76.6	84.9	92.3	100	8.8
• 복지분야 법정지출	59	62.9	67.7	72.6	78.8	7.5
• 이자지출	17.3	16.9	17.4	17.6	17.8	0.6
• 기타 의무지출	4.1	4.1	4.2	4.3	4.5	2.4

3.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43.5	373.1	396.1	415.2	439.1	6.3
(증가율)	(9.3)	(8.6)	(6.2)	(4.8)	(5.7)	
• 국세수입	205.8	216.4	238.9	259.1	280.4	8.0
• 세외수입	28.3	37.4	33.6	26.7	26.1	△2.0
• 기금수입	109.5	119.3	123.6	129.5	132.6	4.9
■ 조세부담률	19.8	19.8	20.2	20.4	20.5	

2013년 총수입은 2012년에 비해 8.6% 증가한 37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수입 중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2년 예산에 비해 5.2% 증가한 216.4조원으로 전망되었는데,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국내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제시하였다. 국세수입은 2016년까지 연평균 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경상성장률보다 빠른 증가속도로 조세부담률은 소폭 상승하여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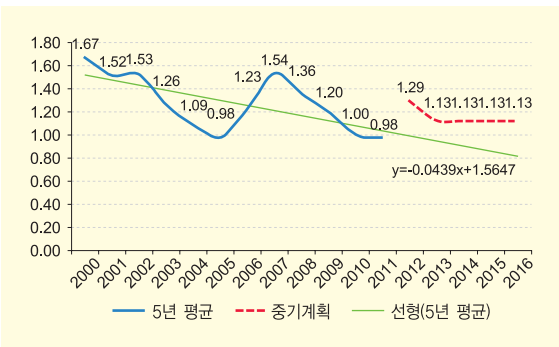
세입전망은 보통 경제성장률 전망과 국세수입 탄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안의 성장률 전망은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기존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으나 다른 기관들의 전망에 비하여 아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탄성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국세탄성치의 5개년 평균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경제외기를 겪으면서 하향 추세를 보여왔는데,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전망치는 이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중기적인 시계에서 보면, 이 수준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난 추세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추가적인 세수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2년 예산안에는 몇몇 세수 확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 최소세율을 신설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과세·감면제도의 정

비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관행을 보면 일몰이 도래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의 연장되는 경향들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폐지를 제고를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국제탄성치(5년 이동평균) 추이와 중기재정전망



주: 2012년 세입탄력성은 정부전망 경제성장률 3.6%(경상성장률 5.4%) 가정하에서 도출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예산정책처 전망치) 2.5%(경상 4%내외)를 적용하면 1.74로 높아짐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를 해야만 위기 시 재정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국내 산업이 활력을 잃어간다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이 이번 예산안에 잘 표현되어 있다.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이미 천명했던 2013년 균형재정의 기초는 유지하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와 수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지출효과를 극대화하고 3대 유형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의 노력을 한 것도 눈에 띈다.


2008년 MB정부가 처음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할 당시에는 지난 4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될는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즉각적인 경기대응이 어려운 재정정책의 특성상 재정정책을 실현할 수단을 마련하는 예산안은 당연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대내외 환경이 평시 보다 훨씬 큰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견지하고자 노력한 점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일견 상반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Ⅲ. 맺음말

2013년 정부 예산안과 2012-1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표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하방 위협과 유럽 및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내부적으로는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서 MB정부의 마지막 연도이면서 다음 정권의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는 2009년을 전후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위기라던 지난 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늘어난 채무는 여전히 정부 재정정책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위기를 통해 평상시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

정책당국을 비판하는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정책당국은 지속적으로 양 측면에서의 비판에 주의해서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불확실성이 어느 방향으로든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많은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주위의 의견과 비판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나 균형 잡힌 전체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높은 201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

-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최기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최기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은 최근 들어 충격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가 IFRS를 도입한 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충격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IFRS 도입이 우리의 세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IFRS 도입이 세법에 미칠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영향보다 중요한 것은 IFRS 도입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즉, IFRS 도입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술계나 실무계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념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측정 대상이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측정 대상을 현실적으로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목표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간의 공평한 조세채무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소득은 조세채무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천은 아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도 세법은 오직

과세당국만을 외부 이해관계자로 가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가정하며 특히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은 보고단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세법에서는 과세관할이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계기준에 비하여 보고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과 앞선 이익측정 모형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회계기준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장 중시하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세법에서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중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취득원가 모형이나 현금주의 모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이 갖는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이익측정 모형의 적용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된다.

이를 볼 때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현재와 같은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한다면 양자는 일치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측정 대상 면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보다 측정 대상인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측정하는 데 따른 이차적 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쪽에서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게 된다면 양자의 일치 정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 특히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에는 정책적 목표와 같은 정치의도가 개입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정치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세법과 회계기준은 지금보다는 일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II.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세법과 회계기준은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나는 일차적 원인은 바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너스 계약이나 부채계약 등과 같이 여러 유인들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가급적 올리고자 한다. 반대로 경영자들은 현금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얼핏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 조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원인이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아닌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에 있는 것이라면 양자의 차이는 보다 엄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당기순이익이 과세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벌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의 행태가 다른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양자의 차이는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은 모두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대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클수록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요인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더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일관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익조정 유인과 조세회피 유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 증거들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론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경영자들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유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서 동시에 이익조정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반영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의 차이를 보완하게나마 감소시키는 것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일치에 따른 효익과 비용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되는 경우, 효익의 핵심 원천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의 상충관계이

다. 상충관계의 본질은 어느 한편의 희생 없이 다른 한편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행위 간 상충관계가 강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행위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상충이 존재하는 여러 상황에서 경영자가 실제로 상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후입선출법의 선택, 세법 변경에 따른 소득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조정 혹은 조세회피 행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충관계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충관계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상충관계는 강화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일치도가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중국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은 일치도가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시기별로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치도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치도하에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해본 결과에 따르면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 조세회피 혹은 이익조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조세회피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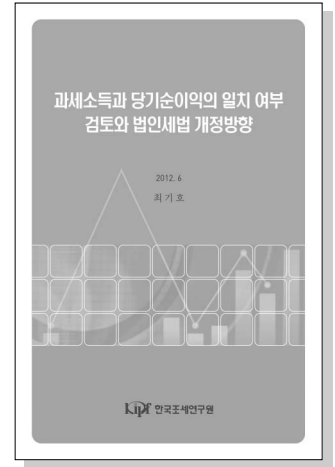
일치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용의 핵심 원천은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갖고 있던 정보 가치의 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자본시장에서 이용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치가 큰 정보이다. 그렇지만 과세소득도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가치를 갖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몇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과세소득은 미래 이익, 미래 주가, 미래 신용등급의 변동 등을 예측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가치를 갖는 이유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달라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에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경영자의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성만을 보자면 당기순이익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계기준에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취약한 당기순이익의 측정 신뢰성을 과세소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Hanlon(2005)이 발견한 것처럼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 증거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세법상 현금주의를 허용하던 기업들을 강제로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치도가 강제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에서는 이익반응계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일치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현재 당기순이익을 통한 미래 당기순이익의 예측가능성 정도 혹은 미래 현금흐름과 현재 당기순이익의 관련성이 낮았다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에 따른 효익과 비용 모두 많은 실증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B5번형/ 367면
2012. 6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다. 아마도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는 정책당국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효익과 비용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IV. 미국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과 정책적 대응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상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을 소개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미국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Desai 교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이다. Desai 교수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회계부정과 조세회피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일견 상충적인 것으로 보이는 회계부정과 조세회피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세무보고와 재무보고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로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나 당기순이익의 추정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Desai 교수는 특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중보고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이중보고라는 명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태가 기업에 이를 상쇄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때의 가치라는 것이 바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동시 추구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말하고 극단적인 방안이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많은 회계학자들은 과세소득이 갖는 독특한 정보가 상실될 것이며 세법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의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됨으로써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결과적으로는 실증적인 문제일 뿐이며 실제로 양자를 일치시키면 경영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대응은 간단하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회계와 세법이 분리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세무보고 양식인 M-3의 개발이다. M-3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이 왜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든 새로운 양식이다. 이는 Enron 사태 이후 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에 IRS와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기업 과세자료의 공시에 대한 논쟁이다. 기업 과세자료를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채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다. 그렇지만 진보는 계속 진행 중이다. 2007년 FASB는 FIN48을 제정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채무와 기대하는 조세채무와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일부 경영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란과 대응 방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이에 대해 정부나 과세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학계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정반대이므로 미국에서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V.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여부 검토 및 법인세법 개정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설정된 관계를 전제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과세소득 계산에서 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결산조정 원칙이 세법에 잠재되어 있다. 결산조정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기까지 많은 논쟁을 거쳤다. IFRS 도입 이전에는 주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형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나 결산조정 혹은 신고조정 간의 논쟁이 있었다. 대체로 모든 주장은 현상태보다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IFRS 도입 이후에는 모든 상황은 바뀐다. IFRS 도입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회계기준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IFRS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인데 본 보고서에서의 검토 결과는 IFRS는 법인세법의 준용규정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쟁은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을 어떻게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실무를 지배해 오던 법인세법을 급격하게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에 단기, 중기·장기로 나누어 각각 분리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차례로 분리가 추진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될 수 있다.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는 공시의 문제가 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세무보고와 재무보고 측면에서 공시하는 것은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Enron 사태 이후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의 단점을 지적하고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이제는 세법과 회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극단적 방법이 아닌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충분하게 공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과세당국에 그리고 자본시장참가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회계기준 제정권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정책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법인세법이 유일



하다. 이러한 점에서 세법을 관장하는 당국자들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에게 큰 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세무와 회계학계에 대해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요약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정책포럼



■ 제28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제28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일 시 2012년 9월 19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토랑 스카이볼룸(12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 08:45~09:25 자유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서울 팔레스토랑 스카이볼룸(12F)에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현 유럽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인해서 비롯되었고,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역시 그 원초는 신용등급이 적절치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에도 정부의 복지정책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이 건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 건전한 재정 앞에 복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물론 국민의 열망과 소득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향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국가운용계획에 관한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가장 적절한 분과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주제발표 요약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임채민/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는 국민의 여망과 정책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복지 지향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후발 주자의 이점(second move advantage)을 언급하면서 과거 복지

지향 국가들의 시대상황과 경제상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현 상황의 복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제도를 갖춘 상대적으로 앞선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건강보험 등의 제도들에 대한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난 5년 동안의 복지정책의 성과를 보면 예산 측면에서 2007년 61.4조원에서 2012년 92.6조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7.7%에 이르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복지프로그램 대상자들도 2008년 835만명에서 2012년 7월 기준 1,434만명으로 증가해 복지서비스도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졌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 경제는 고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로부터 경제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의 제공을 통해 일부 사회의 통합력 약화를 막아보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책임이나 지구력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포퓰리즘적 대응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며 가능하면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랜드마크(landmark) 등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세련된 방식의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했고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만고역정을 겪으면서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는 있다.

정부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보면 2004년 이후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내놓은 매뉴얼에 따른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OECD국가들 중에서 복지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들의 고령화

율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높다는 점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가 20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은 선진국 복지 프로그램의 70% 정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지출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머지않은 장래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여러 정책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고성장 시대가 마감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노동 구조의 변화 및 비정규직의 문제로 영세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새로운 복지 수요의 폭발 가능성을 산업·고용구조가 안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출산율은 OECD국가 중 하위 두 번째이며 고령화 또한 빨리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도 우려스러운 문제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의 과제를 가장 잘 농축해 놓은 현상이기도 하다. 독거노인은 통계상으로 전체 노인의 20%인 약 120만명으로 추정되며, 본인에게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들과 결별 내지는 무관심으로 인해 절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녀를 둔 독거노인의 절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복지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가족의 책임, 국가의 책임, 소속된 직장의 책임 등이 국민들 사이에 잘 인식되어야 복지정책을 원만히 풀어나가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특히 한·중·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적인 지역구도 같은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생존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는 복지정책을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민육구 수준의 변화로, 복지 혜택이 없을 때보다 복지 혜택이 있을 때의 국민육구가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혜택이 없을 때에는 보육에 관한 여론이 잘 형성되지 않았지만,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는 음식의 질, 교사의 능력, 시설의 문제, 공공립과 사설의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부모의 간섭, 선생님들의 처우 등이 하루도 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 단계의 국민육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 불안의 증가, 양극화 등의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불안, 초조함 등 또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이행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과 국민들의 인식, 육구의 우선순위 등을 파악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방향을 잘 설정해 제도 내실화와 전달체계 효율화로 지속가능성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IGS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기본적으로 복지가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나 복지지출의 과다에 앞서 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나라들의 특별한 성장동력을 제때 전환하지 못한 점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로 GDP의 2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안게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선진국 중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예시되는 스웨덴의 경우는 복지의 기본전제가 완전고용과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에는 제대로 작동했지만 석유파동이 오면서 스웨덴의 복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과거 70년대 이전의 복지체계에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스웨덴의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복지제도 자체를 성장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재생산 과정을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해 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형 사회서비스 같은 것이 있다.

둘째는 부담과 혜택의 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각종 사회보험을 모두 더해 25% 정도인 데 반해, 스웨덴의 경우는 50%에 육박하며 OECD국가 대부분도 30~40% 수준이다. 그러므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변수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노인의료비 증가 등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세와 사회보험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 어떤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가가 향후 정책선택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유연성으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많이 줬다가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건이 안 되면 줄이고, 형편이 나아지면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큰 저항이나 마찰,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 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진화시킬 수 있는 정치모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자기 살림이라 생각하고, 단지 복지 혜택을 받는 쪽이 아니라 복지를 주는 쪽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기업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우

리나라 5대 보험의 절반을 부담하는 복지재원의 중요한 공급처이므로 복지에 대해 무조건 반대나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기술로, 복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복지전달이나 행정 등에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 같은 좀 더 질적인 행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관련 기관들이 정책을 통합할 때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질적 만족 등에 맞춰야 할 것이며, 그 '만족' 안에는 균형이나 형평 등이 어느 정도 배어 있을 것이다.

현 복지정책의 중요한 분야는 건강·의료, 노후 소득보장, 보육/육아, 빈곤/탈수급 4가지가 있다. 우선 건강과 의료분야에서의 과제는 건강보험으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2.9%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한 번만 더 인상되면 3%라는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비가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인의료비가 1/3을 넘어서고 있어 자신들이 낸 의료비의 절반을 노인들이 사용하는 구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디까지 인내해 줄 것인가가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의료지출 금액의 98%를 '치료'에 쓰고 있으며 2%만이 '예방'에 쓰고 있는데, 그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건강의료 지출구조를 바꾸기 위한 관련 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노후 소득보장 분야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이슈로 제기되는데, 소득대체율을 40%로 책정해서 필요한 소득의 40%는 최소한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60%의 문제가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준비 또는 자기 자산의 유동화 노력을 함께 하지 않고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는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해 노후준비에 점수를 매겨 70점 미만인 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노후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 고령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노후준비를 반성하자는 의미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복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육/육아 분야는 보육과 양육의 격차가 100:15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근로활동지원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빈곤/탈수급 분야는 140만~150만명 정도 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120만명 정도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빈곤의 첫째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수급으로 넣을지 아니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해야 할지이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위 '바운스 백' 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즉 단기기간의 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단은 하나의 트랙에 들어와 있다가 1년 정도 생활을 지원하면서 자활능력이 좋아지면 1년 후에 졸업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수급자의 범위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재기의 기회를 한 번만 줄 것인지 두 번 줄 것인지의 문제,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고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과제 등이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외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지는 많이 진전되었고, 진전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복지는 복지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아무쪼록 여

러 공공부문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자유 토론

김성진/기재부 제도기획과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일자리와 복지를 잘 결합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전달체계의 문제도 있고, 일자리 등의 연결이 상당히 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Healthcare R&D 분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Healthcare 부문의 R&D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김병복/한국감정원 미래전략실장

육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기관에 맡겼을 때는 지원이 되는 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쪽이 아닌 남에게 맡겨서 키우는 쪽을 지원하는 구조는 빨리 수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8월 5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과거에는 그냥 입양기관에 맡기면 입양이 되었으나, 지금은

미혼모가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옮긴 후 입양이 되어야 호적에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입양되지 않으면 그 미혼모는 평생 아이를 호적에 가지고 가야 한다. 그로 인해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한다.

임채민/발표자

고용과 복지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말단에서는 나름대로 유기적인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과 복지부의 자활사업 대상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금 저임금근로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이 있어야겠기에 최근에 관련된 조사를 지시하였다.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들이 취업할 수 있을 만한 일 중에서 외국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의 임금 격차가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자국민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그 차액이 생계수단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적다면 그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Healthcare 분야의 R&D에 관한 질문은 이것 역시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 부처 이기주의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과제이다. 물론 기초연구는 교과부가 관장을 하고 각종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요나 의학적인 타당성 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Health technology 분야야말로 절대적으로 융합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기술의 탐색 과정이나 설계부터 개발 과정에 이르기까

지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처음에 사업단 자체를 기초부터 실용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는 예산 집행을 바꿔서 1억, 2억원짜리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처럼 주던 R&D 방식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대형 과제 중심으로 모으면서 대학과 병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제 방식을 바꾸고 있다.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보육과 양육정책의 원칙은 OECD의 권유도 그렇고 전 세계 누구에게 물어도 36개월 미만까지는 엄마가 기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은 '36개월 미만은 가정 양육'이 원칙이다. 다만,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보육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육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일하는 엄마 외에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취업계층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0~2세, 36개월 미만까지의 보육정책의 기본 틀인데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3세 이후의 아이부터 취학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기르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성, 인성,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는 등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기의 무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5세에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3세, 4세까지 다 의무화하려고 한다. 그냥 쉽게 조기의무교육이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은 금액으로 따지자면 현재 평균 85%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2016년까지는 100%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

미혼모의 출생신고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 제도가 후진적인 제도이다. 이번 8월 5일에 시행된 입양숙려제도, 그리고 미혼모가 출생한 아이도 일단 출생신고

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된 나라의 제도이다. 태어났을 적에 그 아이는 쉽게 말해 무적(無籍)이므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 일단 신고를 하되, 그 기록 자체가 미혼모나 아이의 미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아이가 장성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법원에 신청을 하면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출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입양기관들 중에 입양을 장려하는 기관들이 있는 데 이들 기관에서 자꾸 이결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 제1원칙은 엄마가 기르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가정위탁 내지는 친척이 기르는 것이고, 국내입양은 셋째, 해외 입양은 넷째이며, 시설 위탁은 서열 5위이다.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시설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수용되는 건 아동정책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입양숙려제도를 도입해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입양기관에 맡긴 후 그냥 도망가 버리던 것을 일주일 동안은 아이와 생활하면서 모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국외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면서도 ‘헤이그 국제입양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 입양이 되어 성년이 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입양아들이 있는데, 자신을 입양했던 가족이 해체되거나 시민권 획득 절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성년이 된 이후에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 미아 같이 된 아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헤이그 협약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법원, 가정법원,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EU
- IMF
- OECD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포르투갈
- 스페인
- 영국
- 미국
- 러시아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U

■ 재무장관이사회, European Semester 개선방안 검토 및 평가(2012. 10. 9.)¹⁾

- (배경) European Semester는 EU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전한 예산 편성과 성장 및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 (과정) 집행위 AGS(Annual Growth Survey) 발표 후 거시경제·재정정책 가이드라인 확정, 이를 통한 회원국별 안정수렴프로그램 및 구조개혁 프로그램 제시
 - 제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전년도 정책권고 이행 평가 후 EU 이사회의 회원국별 정책권고 확정, 회원국의 당해연도·차년도 예산 편성 및 경제정책을 수립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올해 12월에 개선 방안 마련 예정

■ 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 공식 출범(2012. 10. 8.)²⁾

- (지원방식) 구조개혁 등 엄격한 조건에 따라 예방적 금융 지원,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 대출 및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지원
- (규모) 내년 6월까지 EFSF와 병행하여 지원, 병행 기간동안 최대 지원한도는 7천억 유로
- (자본금) 확정자본(subscribed capital)은 7천억 유로이며, 이 중 납입자본금은 800억 유로, 나머지

6,200억 유로는 필요 시 납입

- 납입자본금은 2014년 상반기까지 5회 분납, 올해 10월말까지 2회분 납입 예정
- ESM 채권 발행액 대비 납입자본 비율은 최소 15% 유지, 하회할 경우 자본금을 조기 납입해야 함
- (기대효과) 유로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ECB의 승인과 대출 지원 등을 받아 위험 국가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국채시장의 안정을 도모
- (한계)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점, ESM 기능과 지원 조건에 대한 회원국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

■ 재무장관회의, 그리스에 재정긴축 처리 요구 및 포르투갈 구제금융 집행 승인(2012. 10. 8.)³⁾

-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에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과 긴축 및 개혁조치 협상을 EU 정상회의(18일)까지 합의할 것을 요구
 - 트로이카가 요구한 추가 재정긴축과 민영화 조치를 그리스 정부가 수용하고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 등의 처리에 합의해야 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에 780억 유로 구제금융 중 43억 유로 집행을 승인
 - 5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평가에서 합의한 재정긴축 달성시한 1년 연장(2014년) 및 2012~2013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수준 완화*에 대해 최종 승인
- * (2012년) 5% → (13년) 4.5% → (14년) 2.5%

1) Council of the EU(Councilium),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3189th Council meeting Press Release, 2012. 10.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2771.pdf)
 2)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genuin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2012. 9. 3.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2734.pdf)
 3) Council of the EU(Councilium), "Eurogroup Statement on Portugal," 2012. 10. 8.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ofin/132762.pdf)

- 고위 금융전문가그룹, 유럽 금융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2012. 10. 2.)⁴⁾
 - 2012년 2월부터 고위 금융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EU 내 금융부문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은행부문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
 - EU 집행위는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방안들의 영향을 검토, 의견수렴 후 법 개정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
 - (내용) 자기자본거래와 여타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효율적인 회생 및 정리 계획 마련, 지배구조 개선 등 은행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



- 브뤼셀(Brussels) 기반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Bruegel과 IMF의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은 금융부문 과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2012. 9. 19)
 - 참가자들은 금융부문이 미래 금융위기의 재정비용을 해결하는 데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함에 동의
 - 금융부문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나라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은행과세 방안을 논의
 -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es)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 부가가치세의 형태를 확장하기 위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es)⁵⁾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
- IMF, 2012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보고서' 발

- 표("201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2012. 8. 27)(2012. 9. 20)
 - (대내) 2011년과 2012년에 유로 지역의 위기가 더 심화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약화되었고 한국경제도 세계경제 약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
 - (경제성장) 높은 가계부채로 개인소비 감소, 2012년 말까지 작은 마이너스 산출량 갭(output gap)이 지속되어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3%, 2013년에는 3.9%로 증가
 - (위험요인) 한국경제의 주요 단기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위기의 확대를 언급
 -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12년 하반기 3.5%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전체기간 동안은 평균적으로 2.8%, 2013년은 3.2%로 전망
 - (금융) 2011년 말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 14%로 자본이 잘 충족, 모든 국내 상업은행에서 최근 도입된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의 최고한도가 충족됨
 - (대외) 정부당국의 공동 노력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적인 취약성은 감소
 - 단기외채에 비해 높은 외환보유액(foreign reserves), 은행의 단기 부채의 감소, 비핵심 시장성 수신(wholesale funding)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은행의 외국통화 유동성의 확충 때문임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현재 거시정책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결합

4) European Commission, "High-level Expert group on reforming the structure of the EU banking sector presents its report," Press Release, 2012. 10. 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2/1048&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

5) 금융기관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거나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



- 재정적자는 2011년에 GDP 대비 1.1%, 2012년에 GDP 대비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예상된 경제전망보다 낮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2012년 6월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폭의 경제부양 조치를 채택한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 1년간 유지해 온 정책금리를 2012년 7월에 0.25% 하락시킴

〈표 1〉 2008~2013년 경제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Projections	
Real GDP (%)	2.3	0.3	6.3	3.6	3	3.9
Total domestic demand	1.4	-2.7	6.2	2	2.4	3.1
Final domestic demand	0.8	0.6	4.5	1.3	2.6	3.1
Consumption	2	1.2	4.1	2.2	2.5	2.9
Gross fixed investment	-1.9	-1	5.8	-1.1	3.1	3.6
Stock building	0.6	-3.1	1.4	0.7	-0.2	0
Net foreign balance	1.1	2.8	0.1	1.9	1	1.2
Nominal GDP(in trillions of won)	1,026	1,065	1,173	1,237	1,318	1,411
Saving and investment (in % of GDP)						
Gross national saving	31.6	30.2	32.4	31.8	31.2	31.3
Gross domestic investment	31.2	26.3	29.5	29.5	29.2	29.6
Current account balance	0.3	3.9	2.9	2.4	2	1.7

Prices (%)						
CPI inflation (end of period)	4.1	2.8	3	4.2	2.8	3.1
CPI inflation (average)	4.7	2.8	2.9	4	2.8	3.2
Core inflation (average)	4.3	3.6	1.8	3.2	2.2	3
GDP deflator	2.9	3.4	3.6	1.7	3.5	3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19.9	-12.5	11.4
Trade (%)						
Export volume	6.8	0.1	16.2	11.6	5.6	10
Import volume	0.9	-2.2	16.8	5.5	4	10.9
Terms of trade	-14.3	10.8	-0.9	-8.2	-2.2	0.1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in % of GDP)						
Revenue	24	23	22.7	23.4	23.5	23.5
Expenditure	22.4	23	21	21.6	21.5	20.8
Net lending(+)/ borrowing(-)	1.6	0	1.7	1.8	2	2.7
Overall balance	1.5	-1.7	1.4	1.5	1.6	2.4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1.1	-4.1	-1.1	-1.1	-0.9	0
Balance of payments (in billions of U.S. dollars)						
Exports, f.o.b.	434.7	358.2	461.4	552.6	577.9	633.8
Imports, f.o.b.	429.5	320.3	421.4	521.6	549.1	606.1
Oil imports	85.9	50.8	68.7	100.8	101	96.3
Current account balance	3.2	32.8	29.4	26.5	22.5	21
Gross international reserves (end of period)	201.1	269.9	291.5	304.2	319.2	334.3
In percent of short-term debt(residual maturity)	111.7	146.2	162.6	165.9	167.4	168.2
External debt (in billions of U.S. dollars)						
Total external debt (end of period)	317.4	345.7	359.4	398.4	419.4	440.3
Of which: Short-term (end of period)	149.9	149.2	139.8	136.1	140.5	145.7
Total external debt (in percent of GDP)	34	41.5	35.4	35.7	36.7	36.4
Debt service ratio	7.9	7.8	6.8	6.4	7.4	7.3

자료: staff report for the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2012. 8. 27) 재인용

- IMF, 'Fiscal Monitor' 발표(2012. 10. 9)
 - 세계성장 약화와 하방 위협의 상승으로 재정건전화 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에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12. 10. 9)
 - 유로 지역의 위기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어렵게 전망
-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2012. 10. 10)
 - 유럽 당국의 위기 해결책이 미흡하여 지난 4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발표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도가 개선되지 못함
 - 2013년 까지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규모가 확대되어 부채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유로존과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
 -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 규모는 내년까지 2조 3천억~4조 5천억 달러로 예상
 - 유럽중앙은행(ECB)의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를 통한 무제한적 국채 매입, 미국의 모기지 채권 매입과 일본의 자산 매입 규모 확대 등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조치들이었음
 - 유로 지역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최상(Complete policies)’와 ‘기준선(Baseline)’ ‘최악(Weak policies)’ 등 3가지로 구분
 - 최상의 시나리오로 정책입안자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추진하여 유로 지역이 재정적으로 재통합되는 경우를 가정(디레버리징 규모 2조 3천억 달러, 유로존 성장률 +0.8%p)
 - 기준선이 되는 시나리오로 유로존 통합을 위한 단

일 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도입같은 정책으로 시장 신뢰가 점차 회복되는 경우를 가정(디레버리징 규모 2조 8천억 달러, 유로존 성장률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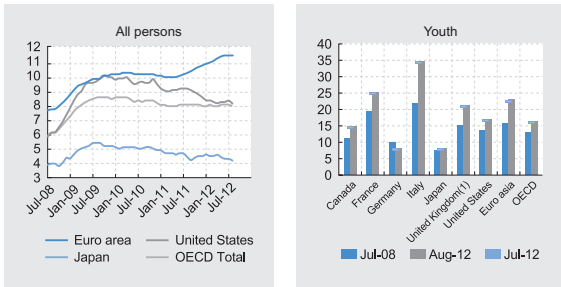
- 최악의 시나리오로 분열 세력이 증가하면서 유로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정(디레버리징 규모 4조 5천억 달러, 유로존 성장률 -1.5%p)
-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방지하며, 부채 한도(debt ceiling)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고, 일본은 은행들이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한 만큼 중기에 정부 채권 수익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



- 8월 실업률 발표(2012. 10. 9)
 - OECD 전체의 8월 실업률은 7.9%로 2011년 8월 이래 같은 수준을 유지
 - 미국과 캐나다는 7~8%대를 기록하였고 호주와 일본은 5.5% 미만
 - 청년층의 실업률은 7월보다 0.3%p 증가해 16.3%로 높은 수치 기록. 특히 스웨덴은 25.7%, 이스라엘은 15.2%를 기록, 이는 각각 2.9%p, 1.8%p 증가한 수치임
 - 유로지역의 8월 실업률은 2달 연속 11.4%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으로 증가
 - 스페인, 그리스가 각각 25.1%, 24.4%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
 -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각각 15.9%, 15.0% 기록한 반면 독일은 5.5% 미만



[그림 1] 8월 실업률(Harmonised Unemployment Rates, s.a.)



주: (1) 영국의 경우 '12년 6월 데이터가 '12년 5월과 '08년 7월과 비교됨
 자료: OECD Newsroom Monthly Statistics, 2012. 10. 9.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6324>

(GDP대비 10%)로 전망에 비해 48억 호주달러 증가한 수준임

- 이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 정부채권(CGS)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순채무가 증가함

- 호주 재무부는 지난주 IMF와 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AAA등급을 받음으로서 강한 재정을 가진 국가로 평가

<표 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0~11 실적	2011~12전망	2011~12실적
재정수입(Revenue) ¹⁾ (GDP 대비 비율)	309.9 (22.1)	336.4 (22.8)	338.1 (23.0)
재정지출(Expenses) (GDP 대비 비율)	356.1 (25.5)	373.7 (25.3)	377.7 (25.7)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비율)	-51.5 (-3.7)	-42.0 (-2.8)	-44.5 (-3.0)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²⁾ (GDP 대비 비율)	-47.7 (-3.4)	-44.4 (-3.0)	-43.7 (-3.0)
순채무(Net Debt) (GDP 대비 비율)	84.6 (6.1)	142.5 (9.6)	147.3 (10.0)

주: 1) 미래기금(Future fund)수익금 포함
 2) 미래기금(Future fund)수익금 제외
 자료: Final Budget Outcome 2011-12.



호주

■ FY2011-12 결산보고서 발표 (2012. 9. 24)

- (예산수지) FY2011-12 예산수지 적자는 437억 호주달러(GDP 대비 3.0%)를 기록하였으며, FY2012-13 예산안의 예측에 비해 6억 6,100만 호주달러 개선된 수치임
 - 이 같은 개선은 3억 5,600만 호주달러의 높은 현금징수(cash receipts)⁶⁾와 305만 호주달러의 낮은 현금지출(cash payments)의 결과임
- (재정수입) FY2011-12 재정수입은 3,381억 호주달러(GDP 대비 23%)로 전망 대비 17억 호주달러 증가
 - 조세수입은 전망보다 약 3억 2,500만 호주달러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망보다 13억 6,600만 호주달러 증가한 것에 기인
- (재정지출) FY2011-12 재정지출은 3,777억 호주달러(GDP 대비 25.7%)로 전망보다 4억 1천만 호주달러 증가
- (순채무) FY2011-12 순채무는 1,473억 호주달러

6) 미래기금 수익금(future fund earnings) 제외

〈표 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전 망	2011~12 실적
일반공공서비스	21,944	23,153
국방	21,656	21,692
공공질서 및 안전	4,072	3,999
교육	29,259	29,050
의료	61,168	62,012
사회보장 및 복지	126,879	126,747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6,238	6,180
여가 및 문화	3,705	3,809
연료 및 에너지	6,633	6,464
농업, 산림, 어업	3,255	2,953
광업	2,114	2,245
교통 및 통신	9,178	9,129
기타 경상비	9,758	10,054
기타 목적	67,812	70,253
공공채무 지급이자	11,510	11,421
연금지급이자	7,358	7,376
정부간 이전	49,555	49,940
자연재해 구조비용	815	1,516
긴급예비비	-1,426	0
총지출	373,671	377,740

자료: Final Budget Outcome 2011-12.

- 호주정부는 미래펀드의 예산 처리에 관한 보고서 발표⁷⁾(2012. 10. 08)
 - 미래펀드 수익(Future fund's earning)은 그간 2006년 이래로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쳐 제외되었음
 - 최근 미래펀드의 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예산수지 계산 시 기존의 총(gross)금액 제외기준에서 순

(net)금액 제외기준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정부는 FY2012-13 MYEFO 발표 전에 미래펀드의 처리문제에 관해 고려할 예정

 캐나다

- FY2011-12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2012. 10. 5.)
 - 캐나다 재무부는 결산보고서를 발표하고, 총수입 증대로 FY2011-12 예산적자가 전년 대비 21.6% 감소했음을 강조
 - (총수입)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2,452억캐나다달러
 - (총지출) 이진지출 중 노령연금 지출이 증가(전년 대비 6.8%)하였으나 고용보험 지출이 감소(전년 대비 11.1%)하여 상쇄됨에 따라 총지출은 소폭 변동
 - (연방채무) 연방채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 감소

7) 자료: 『Budget treatment of future fund COSTS in the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and financial documents』,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www.treasury.gov.au/~media/Treasury/Publications>



〈표 4〉 FY2011-12 결산보고서 요약

(단위: 억캐나다달러, %)

구 분		2010-11	2011-12	증가율
규모	총수입	2,371	2,452	3.4%
	총지출	2,705	2,714	0.3%
	프로그램지출	2,396	2,404	0.3%
	공공채무비용	309	310	0.3%
	예산수지(Budgetary balance)	△33.4	△26.2	△21.6%
	연방채무(Federal debt) ¹⁾	5,503	5,822	5.8%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6	14.2	△2.7%
	총지출			
	프로그램지출	14.7	14.0	△4.8%
	공공채무비용	1.9	1.8	△5.3%
	예산수지(Budgetary balance)	△2.1	△1.5	△28.6%
	연방채무(Federal debt)	33.9	33.8	△0.3%

주: 1) 연방채무는 누적기준임

자료: 캐나다 재무부, "FY2011-12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 2012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2012. 9. 27.)

- (개요)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는 캐나다 정부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통계청의 인구 및 거시부문 전망치를 바탕으로 향후 2086년까지의 정부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
- (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연방정부 및 CPP, QPP⁸⁾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반면, 지방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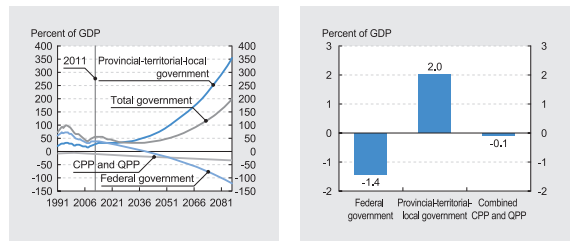
8)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제도 / QPP, Quebec Pension Plan: 퀘벡 연금제도

9) 여기서 순채무는 GDP대비 순채무 비율을 일컫음

10) 재정갭이란 현재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기초재정수지에서 현재 기초재정수지를 뺀 값임

- (순채무⁹⁾) 전체 정부(Total government) 부분의 순채무는 지방정부 순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약 50% 수준에서 2086년 200%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
- (재정갭¹⁰⁾) 75년을 기준으로 재정갭(fiscal gap)을 추정한 결과, 연방정부 재정갭은 GDP 대비 △1.4%로 나타난 반면 지방정부는 2.0%로 나타남

〈그림 2〉 캐나다 정부부문 순채무(GDP 대비) 및 재정갭 전망 결과



자료: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 2012. 9. 27.

프랑스

■ FY2013 예산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3) 발표(2012. 9. 28)

- 2012년 수정전망 대비 1.6% 증가한 3,746억유로의 예산안 편성
 - 지출은 전년(2012년 수정전망) 대비 60억유로 증액에 그친 반면, 수입은 283억유로 규모로 대폭 증가
 - 특별계정 등을 고려한 총재정수지적자는 전년 대비 220억유로(26.3%) 감소

〈표 5〉 2013 중앙정부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1년 확정치	2012 수정예산	2012 수정전망	2013 예산안
재정지출	361.5	369.2	368.6	374.6
재정수입	271.4	287.9	284.4	312.7
재정수지	-90.1	-81.4	-84.2	-62.0
예산부족 수지	0.0	0.0	0.0	0.0
특별계정	-0.6	0.2	0.6	0.3
총재정수지	-90.7	-81.1	-83.6	-61.6

자료: PLF 2013

-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설정¹¹⁾
 - 2012년 GDP의 4.5% 규모인 836억유로의 재정적자를 2013년에는 3%인 616억유로로 감소시킬 계획
 - 국가채무(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의 경우, 2013년 91.3%로 2012년보다 증가하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6〉 2012~2017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재정수지	-3.6	-1.6	-1.1	-0.5	0.0	0.0
재정수지	-4.5	-3.0	-2.2	-1.3	-0.6	-0.3
중앙정부	-3.7	-2.5	-2.0	-1.5	-1.2	-1.0
중앙정부기관(ODAC)	-0.2	-0.2	-0.1	0.0	0.0	-0.1
지방정부	-0.1	-0.1	-0.1	0.0	0.1	0.1
사회보장	-0.5	-0.2	0.0	0.3	0.6	0.8
국가채무 ¹⁾	89.9	91.3	90.5	88.5	85.8	82.9
국가채무 ²⁾	87.4	88.4	87.3	85.4	82.9	80.1
조세부담률	44.9	46.3	46.5	46.7	46.6	46.3
인플레이션율(%)	2.0	1.75	1.75	1.75	1.75	1.75
GDP 성장률(%)	0.3	0.8	2.0	2.0	2.0	2.0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제외

자료: PLF 2013

11) 재정수지 기준으로는 2017년이 균형재정 달성(-0.3) 시점

- 정부지출 감축 정책(100억유로)과 세수 확대 정책(200억유로 이상) 실시
 - 농업분야 및 기업 지급 보조금 삭감(20억 유로),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8억 유로), 국방비 조정(22억 유로), 우선순위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 중지(12억 유로),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정부 지급액 감액(18억 유로)
 -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공제 제한, 대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혜택 폐지, 법인세율을 35%까지 인상, 기업 매각 시 자본이득세 60%로 상향 조정 등
 - 최고 소득세율 45%로 상향 조정, 연간 소득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75%의 특별세가 부과, 130만유로 이상 자산에 대해 자산세율 상향 조정 등

- FY2013 사회보장부문 예산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3) 발표(2012. 10. 1)
 - 2013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39억유로로, 2011년(209억유로), 2012년(174억유로)에 비해 감소할 예정
 - 43억유로 세수증가와 24억유로 지출삭감 시행 계획
 - 담배 및 맥주 판매세 인상, 일반가계가 고용한 잡역부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 약제비 및 의료서비스 비용 삭감, 처방전 발급 납용에 대한 통제 강화



〈표 7〉 201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의료보험(CNAM)	-8.6	-5.5	-5.1
산재보험(CNAM AT/MP)	-0.2	-0.1	+0.3
법정연금기금(CNAV)	-6.0	-5.2	-4.0
가족지원금(CNAF)	-2.6	-2.5	-2.6
일반 제도 수지(Total Regime general)	-17.4	-13.3	-11.4
노후연대기금(FSV)	-3.4	-4.1	-2.6
총액	-20.9	-17.4	-13.9

자료: PLFSS 2013

독일

■ 독일 재무부, 연방정부 보조금 보고서¹²⁾(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발표 (2012.09.25)¹³⁾

- 독일 연방정부의 보조금(재정지원+세제혜택)은 2009년 285억 유로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226억 유로 수준을 나타냄
 -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보조금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2009년 대비 약60억 유로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은 2009년 대비 2012년 약 40%(42억유로) 감소한 반면, 세제혜택(tax benefits)은 약 9%(16억유로) 감소하여 감소분의 대부분을 재정지원이 차지

〈표 8〉 연방정부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추이(2009~2012)

(단위: 십억유로)

연도	2009			2010			2011			2012		
	재정 지원	세제 혜택	합계	재정 지원	세제 혜택	합계	재정 지원	세제 혜택	합계	재정 지원	세제 혜택	합계
금액	10.0	18.4	28.5	7.0	18.6	25.5	6.6	17.1	23.8	5.8	16.8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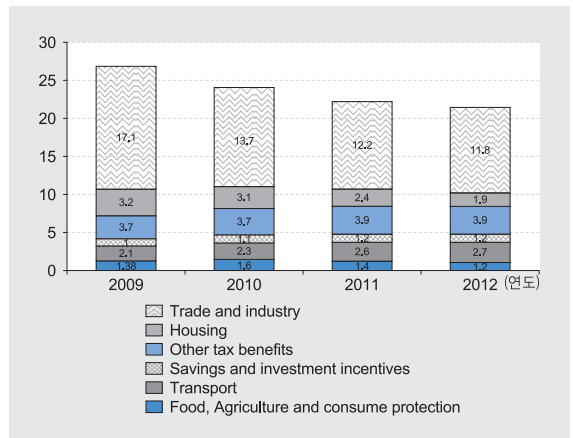
주: 2009, 2010년은 결산기준, 2011년은 예산기준, 2012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수치임

자료: 독일재무부, 23rd 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 경제 부문별로는 정부보조금의 약52%를 무역 및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보조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무역 및 산업 부문의 보조금은 2009년 171억 유로에서 2012년 118억 유로로 30.1% 감소(이 변화분 중 대부분은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됨)
 - 교통·운송 부문과 저축·투자유인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증가

〈그림 3〉 경제 부문별 정부보조금 추이

(단위: 십억유로)



12) Subsidy Report는 독일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며, 4년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나타냄

13)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그리스

- 재무부, FY2013 예산안 초안을 상임위에 제출(2012. 10. 01)¹⁴⁾
- (경제 전망) 2013년도 그리스 실질GDP성장률은 -3.8%, 실업률은 24.7%로 전망
 - 내년도 공공직자 규모를 GDP대비 179.3%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9〉 그리스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6.9	-6.5	-3.8
투자	-20.7	-18.5	-3.7
수출	-0.3	0.4	2.5
수입	-8.1	-10.1	-5.3
CPI	3.1	1.2	0.7
GDP 디플레이터	1.6	-0.1	0.1
실업률	17.3	23.5	24.7

자료: 그리스 재무부, "Προσέδριο Κρατικού Προϋπολογισμού 2013", Table 12

- (재정 전망) FY2013 일반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2%,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1.1%로 설정
 - FY2012 예산안의 재정전망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재정적자를 각각 GDP 대비 6.7%, 4.6%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부채) 2012년도 일반정부 GDP 대비 부채비율은 16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는 179.3% 수준일 것으로 전망

- FY2012 3월 트로이카의 기준선(baseline)에서는, 2012년 GDP 대비 부채비율을 163.2%, 2013년도는 167.3%로 제시한 바 있음

〈표 10〉 일반 정부 부채(ESA-95 기준)

(단위: 백만유로)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망치	2013 전망치
일반 정부 부채	263,284	299,684	329,534	355,600	340,600	346,200
GDP 대비 %	113.0	129.4	145.0	165.3	169.5	179.3

자료: 그리스 재무부, "Προσέδριο Κρατικού Προϋπολογισμού 2013", Table 3.1

- (예산기조)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긴축정책을 실시해 예산 78억 유로 절감 목표
 - 절감내역은 아래 표의 세부내용 참고

〈표 11〉 FY2013 경제 정책 프로그램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013
세출	공공부문	483
	지방정부	100
	임금	1,100
	연금	3,799
	공공혜택	347
	의료	803
	국방	304
	교육	132
	공공 및 기타기업 간소화(streamlining)	241
합계	7,308	
세입	가족수당 간소화	427
	퇴직연령 2년 연장	5
	환급액 삭감	60
	합계	492
총절감 예상액		7,800

자료: 그리스 재무부, "Προσέδριο Κρατικού Προϋπολογισμού 2013", Table 22

14) 자료: 그리스 재무부, "Προσέδριο Κρατικού Προϋπολογισμού 2013"



- (세입) FY2013 순경상 세입은 467억 4,200만 유로 규모로, 2012년 대비 4.5% 감소될 전망
 - 이는 임금 및 연금 부분의 간접세 5억 1,700만 유로가 삭감됨에 따른 것
- (세출) FY2013 세출은 565억 8천만 유로 규모로, '12년도 대비 8.5% 감소될 전망
 - 기초 경상 세출은 452억 9,500만 유로로, '12년도 대비 4.4% 감소될 것으로 전망

〈표 12〉 FY2013 일반정부 예산초안(ESA-95 기준)

(단위: 백만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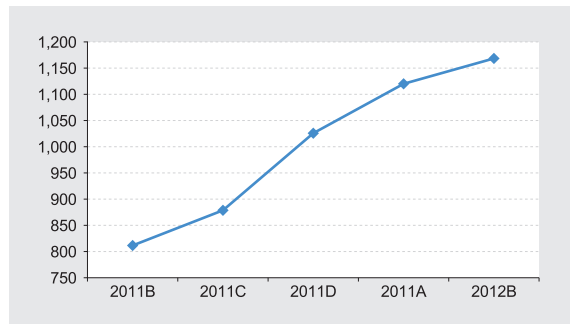
	2011	2012		2013	
		추가경정 예산안 목표치	전망치	경제정책 프로그램 적용 전	경제정책 프로그램 적용 후
I. 세입 (1+2)	53,859	56,159	53,707	43,207	51,840
1. 순 경상 세입	50,090	51,409	48,952	49,109	46,742
2. 공공투자예산(PIB)	3,769	4,750	4,755	5,098	5,098
II. 세출 (1+2)	76,743	70,297	69,109	67,047	63,430
1. 경상 세출	70,135	62,997	61,809	60,047	56,580
2. 공공투자프로그램(PIP)	6,608	7,300	7,300	7,000	6,850
III. 중앙정부 재정수지 (I - II)	-22,884	-14,138	-15,402	-12,840	-11,590
%GDP	-10.6	-6.9	-7.7	-6.5	-6.0
IV. 일반정부 재정수지	-19,394	-13,732	-13,280	-14,081	-8,048
%GDP	-9.0	-6.7	-6.6	-7.1	-4.2
V.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4,493	-2,491	-2,794	-3,921	2,162
%GDP	-2.1	-1.2	-1.4	-2.0	-1.1

자료: 그리스 재무부, "Προσχέδιο Κρατικού Προϋπολογισμού 2013", Table 2.1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12년도 2/4분기 실업률이 23.6%임을 발표(2012. 09. 13)
 - 2사분기 취업자 수는 379만 3,147명이며, 실업자 수는 116만 8,761명
 - 2사분기 실업률은 1사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수치

〔그림 4〕 실업자 수 추이

(단위: 천만명)



자료: 그리스 통계청(ELSTAT)

- 그리스 재무부는 14일 니코시아에서 치러진 유로그룹 회의의 이후, 구제금융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2012. 9. 14)
 - 구제금융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으며, 트로이카와의 긴축협상을 10월말까지 끝낼 계획임을 밝힘
 - 그러나 21일자를 기준으로,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실시단은 일주일간 협상을 중단한 상태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10년도와 2011년도의 GDP 수치가 하향 조정되었음을 발표(2010. 10. 05)
 - 2010년도, 2011년의 GDP 성장률은 각각 -3.5%, -6.9%로 전망되었으나, -4.9%, -7.1%로 재조정됨
 - 이는 가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

아일랜드

- 재무부, FY2011 결산보고서 발표(2012. 9. 28)
 - 2011년 재정수지는 -249억유로(GDP 대비 -15.7%)로 2010년 -187억유로(GDP 대비 -11.9%)보다 악화되었음
 - 이것은 재정수입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하였지만

재정지출은 16.8%로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1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4.9%(1,190억유로)로 지난해에 비해 15%p(2010년, GDP 대비 59.9%) 증가함

〈표 13〉 FY2011 결산

(단위: 천유로, GDP 대비 %)

	2010	2011
재정수입(Receipt) (GDP 대비 비율)	35,621,665 (22.8)	38,666,798 (24.3)
재정지출(payment) (GDP 대비 비율)	54,983,103 (35.1)	64,223,687 (40.4)
재정수지(Exchequer balance) ¹⁾ (GDP 대비 비율)	-18,744,209 (-11.9)	-24,918,480 (-15.7)

주: 1) 감채기금(sinking fund) 2011년 617,229과 2012년 638,409 포함
자료: Finance Accounts 2011

〈표 14〉 2011년 국가채무 결산(National Debt Statement)

(단위: 천유로, GDP 대비 %)

	2010	2011
중장기부채 (Medium/ Long Term Debt)	90,775,000	120,612,000
단기부채 (Short Term Debt)	8,496,000	4,616,000
주정부 저축안 (State Savings Schemes)	10,338,000	11,546,000
자산 (Less cash and other financial assets)	(16,164,267)	(17,692,143)
국가채무 ¹⁾ (National Debt)	93,445,000 (59.9)	119,082,000 (74.9)

주: 1) 국가채무= 중장기부채+단기부채+주정부 저축안-자산
자료: Finance Accounts 2011

- 공공지출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는 공공부문 수당과 상여금 평가(Review of Public Service Allowances and Premium Payments)(12. 9. 18)
 - 정부의 결정으로 새로운 수혜자를 위해 연간 14억

유로의 절반 정도가 수당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부처별로 1,100여건의 수당이 공공지출개혁부에 접수, 8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케이스(business cases)가 고용유지수당(retention of allowances)을 위해 제출
- 정부는 실시된 지출평가의 규모로 보아 2012의 비용절감 목표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지만 임금 예산의 달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공공부문 수당과 상여금 평가로 공공부문 수당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됨
 - 정부는 접수된 사례 중에 고용유지수당(retention of allowances)이 정당화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수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당의 연간 가치는 4억 7,500만 유로
 - 주정부(the State)가 수당을 과잉지불하거나 또는 지급을 연장하지 않도록 연간 2억 4,500만 유로에 달하는 수당의 지급 조건이 수정될 것임
 - EU나 국제기구 회의에서 아일랜드를 대표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영국 밖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지불 가능한 수당은 모두 새로운 수혜자 및 기존 직원을 위해 폐지
 - 정부는 공공사업의 임금관련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상 임금비용을 38억 유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동조합(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과 합의로 2012년 초에 공공부문의 휴가수당이 감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화된 휴가제도가 적용
 - 초과 근무수당의 총 지출은 2010년 이후로 30% 감소 또는 1억 5천만 유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초과 근무수당에서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지출이 절약됨



● **일본**

가. 아시아 거점화 촉진세제 신설

- 2012년 8월 3일 일본에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와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특정다국적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아시아 거점화 촉진법')이 공포됨
 - 이 법률의 목적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과 아시아 본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임
 - 그 배경으로 아시아 신흥 국가의 경제성장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화에 따라 일본 내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을 들고 있음
 - 이 법률은 인증받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총괄사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총괄사업이란 자회사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의 사업을 의미함
 -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5년간 적용됨
- 세제 지원 조치로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특례와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특례가 포함됨
 - 인증기업이란 다국적 기업이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국적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회사 중 2014년 3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 설립된 기업을 의미함

- 법인세 특례로서 인증기업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20% 소득공제를 받게 됨
 - 공제 대상 소득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총괄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
- 소득세 특례로서 인증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과세시기를 주식 양도 시로 이연함
 -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것
 - 둘째, 권리행사가격의 연간 합계액은 1천 2백만 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셋째, 주당 권리행사가격이 부여계약 체결 시 다국적 기업 주식의 주당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넷째,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것
 - 다섯째,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교부가 부여 결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여섯째, 임직원은 행사일로부터 행사에 의해 취득한 주식 전체를 보유하지 않게 된 날까지 그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취득 또는 양도 상황 등을 인증기업에 매년 보고할 것
- 금융 지원 조치로서 인증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인증사업계획에 따라 자본금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상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로부터 출자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특허료 경감과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포함됨

- 중소기업에 한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특허료를 경감함
-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에 따라 대내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간 해당 투자가 금지되지만,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지기간을 2주로 단축함
-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심사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일본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과 일본 중소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함

나. 소비세율 개정

- 2012년 8월 22일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됨
- 이들 법률의 도입취지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형평성이 확보되는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이들 법률 개정에 따라 소비세율은 현재 5%에서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될 예정임
- 소비세율 인상조치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부칙에 밝히고 있음

- 또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된 소비세율 시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부칙 조항으로 두고 있음

〈표 15〉 일본 소비세율 인상계획

(단위: %)

시행시기	소비세율(A)	지방소비세율(B)	최종소비세(A+B)
현행	4	1	5
2014년 4월 1일~	6.3	1.7	8
2015년 10월 1일~	7.8	2.2	10

- 한편, 소비세법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26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 중 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함(중의원 가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 동향」 2012년 6월호 참조)
- 종전 법안 중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8월 10일에 참의원에서 가결된 것임
- 그 대신 부칙 조항을 추가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소득격차 고착화 방지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위한 상속세 과세기반 및 세율구조 재검토, 고령자 보유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여세 재검토를 통해 2012년 동안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다. 재정동향

- ‘일본의 재정관계자료(2012. 9)’ 발표(2012. 10. 1)
 - FY2012 예산안 보충 자료의 내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으며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에 관한 파트와 철저한 예산의 효율화 파트, 부문별 각론이 추가됨

〈표 16〉 ‘일본의 재정관계자료(2012. 9)’ 주요 추가 내용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은 ① 사회보장의 충실·안정화와 ② 재정건전화라고 하는 일본에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개혁 •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에 의한 소비세율 5% 인상은 사회보장의 충실·안정화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 •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에서는 증세로 늘어난 부분은 전부 사회보장에 충당한다는 생각에서, 소비세(국가분)의 용도를 연금·의료·개호·소자녀화 대책으로 한정
철저한 예산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의결·결산검사 보고 등의 반영 • 예산집행조사의 반영 • 정책평가의 활용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의 재정관계자료(2012. 9)’

포르투갈

- 포르투갈 정부, 2013년 추가 건축안의 사회보장공제율(TSU) 누진적 방식 적용의사 밝힘 (2012.9.14)¹⁵⁾
 - Passos Coelho 총리는 2013년부터 근로자들이 지불할 사회보장공제율(TSU) 18%는 누진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도입 배경) 세입감소와 사회보장 지출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6.6%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적자폭 25억 유로를 충당하기 위한 긴급조치

- (기대 효과)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노동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 (차별적 혜택) 극빈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지원을 통해 차별적 혜택을 적용할 것임

- 포르투갈 정부, 2013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될 정부의 추가긴축조치 발표(2012. 10. 3)
 - Vítor Gaspar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도 세금인상조치 발표함
 - (개인소득세) 가산세(imposto adicional) 4% 인상,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축
 - (토빈세 신설) 금융거래세(Imposto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새로 신설
 - (부동산세) 부동산세 인상액을 최고 75유로로 제한한 규정 제거

스페인

- 내각회의,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입 정책 승인 (2012. 9. 14)¹⁶⁾
 - 2013년 관세부족(tariff deficit) 해소를 목표로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입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함
 - 동 조치로 약 27억 유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15) 참고: 포르투갈 정부, 보도자료 「<http://www.portugal.gov.pt/pt/mantenha-se-atualizado/20120912-pm-declaracao.aspx>」

16) 스페인 정부 보도, 〈http://www.lamoncloa.gob.es/IDIOMAS/9/Gobierno/News/2012/20120914_CouncilMins.htm〉

- 지역유동성기금(Fondo de Liquidez Autónomo) 적용을 위한 예산안정법(Ley de Estabilidad Presupuestaria) 일부 개정, 상원 승인(2012. 9. 26)¹⁷⁾
 - 재무장관은 180억 유로의 지역유동성기금 집행을 위한 예산안정법 개정을 상원에 요구하였고, 일부 거부로 인해 비상절차로 승인
- 적자목표 충족을 위해 GDP 대비 약 1.23% 규모의 긴축안을 포함한 2013년 중앙정부 예산안 의회 제출(2012. 9. 29)¹⁸⁾
 - (경제전망) 2013년 실질 경제성장률 $\Delta 0.5\%$, 실업률 24.3%로 전망
 - 2012년(예측치)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1%p, 실업률은 0.3%p 개선 전망
 - (재정전망) 2013년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목표치인 GDP 대비 3.8%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채무는 목표치를 초과하여 GDP 대비 90.5%에 이를 전망
 - (재정수지) 중앙정부 비금융수입은 1,240억유로, 비금융지출은 1,621억유로 규모이며, 국민계정 조정을 통한 총 재정적자는 약 404억유로로 전망
 - ☞ 비금융수입은 지역기관(territorial entities)에 대한 이전(transfer)을 제외한 규모로, 2012년 예산안 대비 약 4% 증가
 - ☞ 중앙정부지출은 2012년 예산안보다 약 6.2% 증가

〈표 17〉 2013년 예산안 재정수지 요약

(단위: 1억유로)

구 분	2013
비금융 수입(non-financial revenue) ①	1,240
비금융 지출(non-financial expenditure) ②	1,621
예산수지(budget surplus or deficit) ③: ①-②	$\Delta 381$
국민계정 조정(national account adjustment) ④	$\Delta 23$
재정수지(Estado net lending/borrowing) ⑤: ③-④	$\Delta 404$ (GDP 3.8%)
중앙행정조직 수지(central administration bodies net lending/borrowing) ⑥	$\Delta 51$
중앙행정 수지(central administration net lending/borrowing) ⑦: ⑤-⑥	$\Delta 409$ (GDP 3.8%)

자료: 스페인 재무부, Presentación del proyecto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3

- (공공채무) 예산안 설명자료(Presentación del proyecto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3)에 의하면, 2013년 일반정부 공공채무 목표는 GDP의 85.8%로 설정
 - ☞ 그러나 동 자료에서 공공채무 규모는 2012년 GDP의 85.3%, 2013년 GDP의 9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8〉 2013-15 공공채무 목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	66.0	66.3	66.6
지역정부	16.0	15.9	15.5
지방정부	3.8	3.8	3.8
일반정부	85.8	85.0	85.9

자료: 스페인 재무부, Presentación del proyecto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3

17) 스페인 재무부 보도, <http://www.minhap.gob.es/es-es/prensa/en%20portada/2012/Paginas/20120926_Senado.aspx>

18)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12.9.29) 및 여론동향(Boletín de Prensa Nacional, 2012.9.28), <<http://www.lamondcloa.gob.es/>>
스페인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minhap.gob.es/en-gb/prensa/en%20portada/2012/Paginas/20120927_PGE_CM.aspx>



- (재정긴축) GDP 대비 약 1.23% 규모의 재정긴축은 세입인상 42%, 지출삭감 58%의 비율로 추진될 계획
 - 스페인 정부 홈페이지 여론동향 자료에 의하면, 일반정부 적자목표 충족을 위한 재정긴축 규모는 약 134억유로로 예상
 - (세입) 신규 세입정책은 상각(amortization) 감면 제한(70%) 24억유로 등을 포함하여 총 44억유로 규모로 계획
 - (세출) 2012년 예산안 대비 중앙정부 부처 예산 8.9% 삭감, 공공고용서비스 기여 22.3% 삭감 등을 추진하여, 사회보장 예산을 제외한 지출규모는 약 7.3% 감축
- ☞ 연금지출은 모든 연금에 적용된 1% 증액계획을 포함하여 2012년보다 4.9% 증가

〈표 19〉 2013년 중앙정부 지출 계획

(단위: 1억유로, %)

구분	2012 예산안	2013 예산안	증감	
			금액	비율
사회보장 기여(contribution)	89	156	67	74.9
이자	288	386	97	33.8
지역기관(Territorial Entities) 재정시스템	365	353	△118	△3.2
공공 고용서비스 기여	133	103	△30	△22.3
정부부처 지출	436	397	△39	△8.9
기타 정부부처 지출 ¹⁾	297	303	6	1.9
합계	1,608	1,621	95	6.2
ESM 기여	82	77	△5	△6.6

주: 1) 공공부문 연금, EU, 예비기금 등을 포함

자료: 스페인 재무부, Presentación del proyecto de presupuestos generales del Estado 2013

- (통합예산) 2013년 통합예산(Consolidated Budget) 총 규모는 3,820억유로이며, 공공채무를 제외하면 사회보장예산이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정책별 지출을 살펴보면 2012년 예산안 대비 일반공공서비스 6.7%, 인프라·교통 등 경제지출이 10.4% 감소하고, 교육·의료 등 사회보장지출이 1.9% 증가
 - 사회보장 지출 중에서는 고용촉진 관련 지출이 △34.6%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실업 지출도 6.3% 감소

영국

- 재무부, 8개 지역과 경제성장을 위한 1차 권한 위임 합의(city deal)(2012. 9. 18.)¹⁹⁾
 - 맨체스터, 리버풀 등 8개 지역에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함
 - 약 3만 7천개의 견습직 및 17만 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별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영국 국세청, 특수 직종 탈세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 운영(2012. 9. 18)²⁰⁾
 - 공평한 납세를 위해 특수 직종 탈세를 엄중 단속하기로 함
 - (조사 대상) 일부 지역의 고소득 변호사, 식품·소매점, 미용업, 레스토랑, 자동차 매매 등에 대한 조사 착수
 - 이를 통해 1,950만파운드 이상의 탈세액을 회수할

19) 재무부 보도자료, 2012. 9. 18, <http://www.hm-treasury.gov.uk/press_84_12.htm>

20) 영국 국세청 보도자료, 2012. 9. 18,

<<http://hmcrc.presscentre.com/Press-Releases/Legal-profession-targeted-in-tax-cheat-crackdown-68035.aspx>>

것으로 기대

- 국세청은 2011년부터 탈세 방지를 위한 30여개의 전담팀을 도입했으며 2014-15년까지 매년 70억 파운드의 탈세액 회수를 목표로 함

■ 영국 금융감독청(FSA), 리보 개혁안 발표(2012. 9. 28.)²¹⁾

- (목적) 금리 조작 사건으로 한계를 노출한 리보 결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적 개편 결정
- (내용) BBA(영국 은행연합회)의 리보 관리권한을 당국에 이전해 FSA가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규제 및 감시 강화
 - 리보 선정에 참여하는 은행 수는 현행 20개 이하에서 향후 40개 수준으로 늘려 조작을 방지함
 - 통화, 기간별 리보금리는 150여개에서 20개로 축소함
 - 리보선정 참여 은행은 대해 관련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제출해야 함

■ 내년도 지방세 동결을 위해 잉글랜드 지방정부에 추가로 4억5천만파운드를 지원할 예정²²⁾

- FY2013-14에 지방세 동결 또는 감면을 결정한 지방정부는 1%의 지방세 상승분과 동일한 금액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 FY2013-14년 지방세 동결은 실질가치로 약 2퍼센트의 감소를 의미함
 - 지난 2년간(FY2011-13) 약 20억파운드를 지방세 동결을 위해 지원한 바 있음

- 정부는 FY2013-14에 지방정부의 지방세 인상 시 조세 투표(tax referendum)를 통해 주민이 인상을 저지할 수 있는 인상분 기준을 2%로 낮출 것을 제안할 예정

■ 10월 1일자로 최저임금(NMW) 인상(2012. 10. 1.)²³⁾

- 성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19파운드로 11펜스 증가
 - 수습직원의 최저임금 또한 5펜스 오른 시간당 2.65파운드이며 16-17세(4.98파운드), 18-20세(3.68파운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동결됨
 - 약 10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

 미국

■ 오바마 대통령 FY2013 세출예산(1조 470억달러) 잠정결의안 서명 완료(2012. 9. 28)

※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9월 2호 참고

■ CBO, 월별 예산보고서(Monthly Budget Review)에서 FY2012 결산 전망치²⁴⁾ 발표(2012.10.5)

- (재정적자) FY2012 재정적자는 약 1.1조달러로 FY2011 대비 2천억달러 감소, GDP의 7.0%의 비중을 차지

21) 재무부 보도자료, 2012. 9. 28, <http://www.hm-treasury.gov.uk/wheatley_review_pn_280912.htm>

22) 재무부 보도자료, 2012. 10. 8, <http://www.hm-treasury.gov.uk/press_89_12.htm>

23) 영국 지식경제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보도자료, 2012. 10. 1, <www.bis.gov.uk/newsroom>

24) 본 결산규모는 미국 재정부의 일간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분석한 추정치임



〈표 20〉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FY (회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	2013 (Alternative Fiscal Scenario ¹⁾)
비율	10.1	9.0	8.7	7.0	4.0	6.5

주: 1) Alternative Fiscal Scenario는 재정절벽 회피에 합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 만료되는 세금감면의 무기한 연기, ② 대체 최저세액(ATM, Alternative Minimum Tax)제도의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적용, ③ Medicare 지급비율 현 수준으로 동결, ④ 예산통제법에 따른 자동지출감소 시행(automatic spending reductions)이 보류될 것을 전제(재정동향 2012. 9. 1호)

- (세입) 총 2.5조달러, 전 회계연도 대비 1,480억달러 증가
 - 세입은 FY2011 대비 6% 증가하였고, 이 중 법인세입은 610억달러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주요 세입 총 증가분의 41%를 차지하였음

〈표 21〉 FY2012 주요 세입 결산

(단위: 십억달러, %)

FY(회계연도)	Actual	결산 추정치	증가율
개입소득세(Individual Income)	1,091	1,129	3.4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	819	850	3.9
법인세(Corporate Income)	181	242	33.7
기타(Other)	211	229	8.6
합 계	2,302	2,450	6.4

- (세출) 총 3.5조달러, 전 회계연도 대비 590억달러 감소
 - 세출은 FY2011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사회보장혜택 및 메디케어를 제외한 다른 주요 세출은 감소하였음

〈표 22〉 FY2012 주요 세출 결산

(단위: 십억달러, %)

FY (회계연도)	Actual	결산 추정치	증가율
국방(Defense-Military)	678	651	-2.9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	720	762	5.9
메디케어(Medicare)	483	469	3.2
메디케이드(Medicaid)	275	250	-8.9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126	96	-23.9
기타(Other Activities)	1,089	1,030	-3.2
소계(Subtotal)	3,371	3,258	-1.5
순 공공채무(Net Interest on the Public Debt)	266	258	-3.0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38	24	n.m ¹⁾
합 계	3,599	3,540	-1.6

주: 1) n.m=Not Meaningful

- CBO, 2012 사회보장연금 장기전망 보고서 「The 2012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Additional Info.」 발표(2012. 10. 2)
 - FY2012 기간 동안 총 7,730억달러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GDP의 약 5%에 해당되는 수치임
 - 연방 총지출의 5분의 1 정도 규모임
 -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당해 세입초과 예상) 현재 사회보장연금의 수급자는 56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머지않은 장래에 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 향후 10년 안에, 사회보장지출이 당해 세입을 10% 이상 초과하고, 2030년에는 20% 이상 초과하면서, GDP의 6%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현재의 법이 지속될 경우, 20년 안에 온전한 사회보장 혜택(full benefits)이 가능한 재원의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

러시아

가. 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면제

- 세법상 외국인의 채권소득에 대한 이자수익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세법개정안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되었고, 2012년 7월 1일에 공포됨
 -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된 세법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 발행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권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함
 - 현재 러시아 세법에서는 국외로 이자수익 지급 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법상 방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면제는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효과임
-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러시아 기관 또는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관이 외국의 기관들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하에서 면제되는 것임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면제는 러시아 국내로부터 외국으로 이자가 지급될 때만 적용됨
 - 이자수익 원천징수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기관이 러시아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명 가능해야 함
 - 러시아 국내로부터 국외로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급사실을 보증받은 지급이어야 함

- 이자수익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은 러시아 당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이어야 하며 해당 채권들에는 러시아 주정부나 지방정부채권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등이 있음
 - 러시아 주정부 채권 또는 지방정부채권
 -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들 중 다음 요건들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채권들
 -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 러시아 증권당국에서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채권예탁과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

나. 러시아 세무당국으로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신설

- 러시아는 세무당국에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대상 납세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당해 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다. 은행거래정지에 대한 요청규정 신설

- 러시아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은행거래에 대하여 계좌 동결 또는 동결 해지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전자적인 형태로 결정문을 보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됨
 - 당해 세법 개정은 2012년 8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



| 정책 흐름 |

- 비과세·감면제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
- 2012년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비과세 · 감면제도 서민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

* 본 자료는 2012년 10월 11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및 산업관세과에서 발표한 「비과세 · 감면제도 서민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 9. 28.(금)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 등에서 현재 비과세 · 감면제도를 서민 · 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총규모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주요 내용

- ① **(국세감면율 하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환급금 지급(△2.6조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15%대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국세감면율이 정부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으로 12%대 수준으로 하락
 - * 추세

* 국세감면율(%)=(08)14.7 → (09)15.8 → (10)14.4 → (11)13.3 → (12 잠정)12.8 → (13 전망)12.1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②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현황)** 서민 · 중산층 · 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 · 대기업에 비해 높으며, 서민 · 중산층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서민 · 중산층 · 중소기업의 국세감면율 비중 추이(%)

(11) 58.2 → (12 잠정) 59.4 → (13 전망) 60.0

* 금년에 처음으로 서민 · 중산층 · 중소기업과 고소득층 · 대기업의 국세감면액 수혜비율을 발표

- ③ **(금년도 비과세 · 감면 정비)** 금년에 일몰도래한 비과세 · 감면 103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폐지 24개, 신설 5개로 비과세 · 감면 제도 수가 19개 감소하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R&D비용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으로 비과세 · 감면 규모가 매년 1.1조 원 축소

* 비과세 · 감면 정비 추이(개) : (08) +9 → (09) +7 → (10) +1 → (11) +7 → (12) △19

- ④ **(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 내년부터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에 대하여도 성과관리제도(성과목표 관리 → 자율평가 →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비과세 · 감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같이 제출('12. 9. 28)

- ⑤ **(주요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중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 금년부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무조건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1982~2011)를 폐지하고

-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완전 전환하였고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된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대기업의 공제액은 축소될 전망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1%p(3~4% → 2~3%) 인하

추가공제율 1%p(2% → 3%) 인상

※ 연간 세수효과 : (12년) +0.6조원, (13년) +1조원, (14년 이후) +1.3조원

④ R&D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 금년부터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였고,
-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R&D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대기업의 공제액은 크게 축소될 전망

* R&D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의 합리화(직전 4년 평균에서 단계적으로 직전연도로 변경)

※ 연간 세수효과 : '14년 이후 매년 +0.5조원

- ④ 최저한세의 경우에도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14%에서 15%로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7%) 유지

※ 연간 세수효과 : '14년 이후 매년 +1,000억원

⑥ (중소기업 비과세·감면 비중) '11년 기준 국제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6.8조원)은 전체 법인세(38.0조원)의 18% 수준이나

- 전체 법인세 감면액(△9.3조원) 중 중소기업(△2.3조원) 비중은 그보다 높은 24.7%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음

※ 조세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1.6조원)을 제외시 중소기업 감면비중은 4.4%p 인상(24.7% → 29.1%)

- 지금까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R&D비용 세액공제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비중이 다소 하락할 전망

⑦ (할당관세는 서민·중산층 지원용) 할당관세는 서민먹거리, 서민연료 및 일부 산업용 기초 원재료를 중심으로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운영

- 특히, 할당적용에 의한 지원 최대 품목은 돼지고기, LNG 등으로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에게 귀착

*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 상위 4개 품목('11년 기준) : 돼지고기, LNG, 원유(나프타/LPG제조용), LPG

- 원유(나프타/LPG제조용)의 경우 나프타(기본관세율 0%)와 LPG(할당관세율 0%)와의 세율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LPG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서민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서민 지원 목적

2012년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2년 10월 9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에서 발표한 「2012년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MF는 '12. 10. 9일 06:30(한국시간) '12. 10월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

① **(동향)** 세계경제 성장세는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며 불확실성도 큰 상황

- **(선진국)** 최근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OMT, 9. 6일) 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생산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고용 및 소비 회복세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시현
- **(신흥국)** 대내의 수요 약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

②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는 '12년 3.3%, '13년 3.6%로 '12. 7월 전망치('12년 3.5%, '13년 3.9%)에 비해 하향 조정

- 동 전망은 유럽의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미국의 재정절벽 방지책 합의 등을 전제한 것임

경제성장률 실적치 및 전망치(%)

	'11	'12 ^e	(7월比, %p)	'13 ^e	(7월比, %p)
세계	3.8	3.3	△0.2	3.6	△0.3
선진국	1.6	1.3	△0.1	1.5	△0.3
신흥개도국	6.1	5.3	△0.3	5.6	△0.2

	'11	'12 ^e	(7월比, %p)	'13 ^e	(7월比, %p)
미국	1.8	2.2	+0.1	2.1	△0.1
유로존	1.5	△0.4	△0.1	0.2	△0.5
중국	9.2	7.8	△0.2	8.2	△0.2

참고: IMF의 우리나라 경제 지표 전망

	'11	'12 ^e	'13 ^e		'11	'12 ^e	'13 ^e
경제성장률(%)	3.6	2.7	3.6	경상수지(GDP대비 %)	2.4	1.9	1.7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2	2.7	실업률(%)	3.4	3.3	3.3

(“In Korea, growth is projected to moderate to 2.7% this year but to pick up to about 3.6% in 2013 because of a rebound in exports and private investment, which is geared toward the tradable sector.”)

③ **(위험요인)**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이며, '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은 17%*로 추정

* '12. 4월에는 4%, '11. 9월에는 10%로 추정한 바 있음

- 단기 리스크로는 ① 유로존 위기 심화, ② 美 재정

절벽 발생 및 부채 상한 조정 실패, ③유가 상승 등을 언급

- (유로존 위기 심화) 유로존 위기 해결책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추가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가피

- (美 재정절벽*) 미국이 재정절벽 방지 및 정부부채 상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전 세계 주가하락 및 경기침체를 야기할 전망

* 다만, IMF는 재정절벽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tail risk)

- (유가 상승) 중동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상승하여 세계 성장률은 둔화

• 중기 리스크로는 ① 양적 완화 부작용, ② 높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 ③ 잠재성장률 둔화 등을 언급

- (양적 완화 부작용) 양적 완화 등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확대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

- (공공부채) 높은 공공부채 수준은 이자율 상승, 세금 인상 등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주요국(美, 日, 유로존)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40%p 증가 시, 주요국의 성장률은 1%p 감소하고 세계성장률은 약 0.8%p 감소

- (잠재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둔화는 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각국의 잠재성장률 하락(日) $\Delta 0.3\%$, (신흥亞) $\Delta 1\%$, (美·유로존·중남미 등) $\Delta 0.5\%$ 할 경우, '15년 세계 성장률은 약 2%p 하락(WEO 전망 대비)

④ (정책제언)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선진국) 중기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의 추진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유로존) 유로존 차원에서는 은행연합 구축*과 재

정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시급

* 예: 은행감독체계 단일화, 범유럽 예금보장시스템 및 은행회생메커니즘 도입 등

- (재정)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재정 목표는 실현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통화) 긴축재정 정책이 당분간 불가피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

*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제 가계·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개선해야 함

• (신흥국)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통해 대외 수요 위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재정)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

- (통화) 신흥국들의 신용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므로, 자산버블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필요*

* 한편, 식량가격 상승이 향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언급

- (내수 확충)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주도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

•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외적자국(美 등)들은 재정건전화를, 대외흑자국(신흥국)들은 시장친화적 환율제도, 사회복지 지출 증대 등을 추진

참고 '12. 10월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2011	2012			2013		
		'12. 7월	'12. 10월	7월전망 대비	'12. 7월	'12. 10월	7월전망 대비
세 계	3.8	3.5	3.3	△0.2	3.9	3.6	△0.3
선진국	1.6	1.4	1.3	△0.1	1.9	1.5	△0.3 ¹⁾
(소비자물가)	(2.7)	(2.0)	(1.9)	(△0.1)	(1.6)	(1.6)	(-)
미국	1.8	2.0	2.2	+0.1 ¹⁾	2.3	2.1	△0.1 ¹⁾
유로존	1.5	△0.3	△0.4	△0.1	0.7	0.2	△0.5
독일	3.1	1.0	0.9	- ¹⁾	1.4	0.9	△0.5
프랑스	1.7	0.3	0.1	△0.2	0.8	0.4	△0.5
이탈리아	0.4	△1.9	△2.3	△0.4	△0.3	△0.7	△0.4
스페인	0.7	△1.5	△1.5	△0.1	△0.6	△1.3	△0.7
일본	△0.7	2.4	2.2	△0.2	1.5	1.2	△0.3
영국	0.8	0.2	△0.4	△0.6	1.4	1.1	△0.3
캐나다	2.4	2.1	1.9	△0.2	2.2	2.0	△0.2
한국	3.6	3.0 ²⁾	2.7	△0.3	3.9 ²⁾	3.6	△0.3
(소비자물가)	(4.0)	(2.8)	(2.2)		(3.2)	(2.7)	
신흥개도국	6.1	5.6	5.3	△0.3	5.9	5.6	△0.2 ¹⁾
(소비자물가)	(7.2)	(6.3)	(6.1)	(△0.2)	(5.6)	(5.8)	(+0.2)
브라질	2.7	2.5	1.5	△1.0	4.6	4.0	△0.7 ¹⁾
러시아	4.3	4.0	3.7	△0.3	3.9	3.8	△0.1
인도	6.2	6.1	4.9	△1.3 ¹⁾	6.5	6.0	△0.6 ¹⁾
중국	9.2	8.0	7.8	△0.2	8.5	8.2	△0.2 ¹⁾

주: 1) 조정폭이 ('12. 10월 전망치)-(12. 7월 전망치)와 상이한 것은 반올림의 영향

2) '12. 9월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 연례협의 최종결과보고서 상의 성장률 전망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본 자료는 2012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9. 28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세감면액)**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11) 29조 6,021억원 → '12(잠정) 29조 7,317억원(+0.4%) → '13(전망) 29조 7,633억원(+0.1%)으로 소폭 증가
 - 국세수입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 ※ 국세수입총액: '11) 192,4조원 → '12(잠정) 203,3조원(+5.7%) → '13(전망) 216.4조원(+6.4%)
- **(국세감면율)** 국세수입 증가 대비 비과세·감면 증가 수준이 낮아 '11) 13.3% → '12) 12.8% → '13)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
 - ※ 2010년 이후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한도 '11) 14.7%, '12) 14.5%, '13) 13.7% 범위 내에서 관리 중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잠정)	2013(전망)
• 국세감면액(A)	296,021	297,317	297,633
• 국세수입총액(B)	1,923,812	2,032,880	2,163,763
• 국세감면율[A/(A+B)]	13.3%	12.8%	12.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5%	13.7%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2012년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현황
 - 주요 증가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1)△23,341억원 → 2012)△24,977억원
 - * 기업의 R&D비용 증가(2010년, 32.8조원 → 2011년, 38.2조원, 16.4% 증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11)△11,729억원 → 2012)△13,090억원
 - * 카드 사용금액 증가(2010년, 1.5조원 → 2011년, 1.7조원, 11.7% 증가)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1)△6,732억원 → 2012)△8,351억원
 - * 중고 승용차 수출 증가(2011년, 9.4억달러 → 2012년(전망), 14.9억달러, 57% 증가)
 - 근로장려금 지급: 2011)△4,020억원 → 2012)△5,971억원
 - * 최대 지급액 증가(연 120만원 → 연 200만원) 및 부양자녀 기준 완화(무자녀가구 추가)
 - 주요 감소항목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1)△27,371억원 → 2012)△21,216억원
 -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를 하향 조정
 - * 공제율 : (변경 전) 투자액의 7%(임투) → (변경 후) 투자액의 5%(임투)+1%(고투)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2011)△8,199억원 → 2012)△4,212억원
 - * 외투기업에 대한 총지원한도 설정(투자누계액의 50~70%,

2010년 세법개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011)△3,827억원
→ 2012)△2,792억원
* 공제율 축소(20% → 10%, 2010년 세법개정)

■ 2013년도(전망) 주요 조세지출 증감 현황

- 주요 증가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2)△24,977억원
→ 2013)△27,076억원
* 기업 R&D투자 증가(2012년 8.4% 증가 전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12)△13,090억원
→ 2013)△14,994억원
*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확대(2011년 세법개정)
*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변경 전) 25% → (변경 후) 30%
전통시장 사용분(신설) 공제율 30%, 한도 100만원 추가
 - 근로장려금 지급: 2012)△5,971억원 → 2013)△6,821억원
* 적용대상 확대(노인 1인가구 추가) 및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2012년 세법개정안)
 - 주요 감소항목
 -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2)△21,216억원
→ 2013)△17,017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변경 전) 임투(5%)+고투(1%) → (변경 후) 기본공제(4%)+추가공제(3%)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2012)△646억원
→ 2013)△108억원
* 대상설비 축소에 따른 공제액 감소(2011년 세법개정)
 -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2)△1,015억원 → 2013)△246억원
* 2012년 농협 합병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종료
- (수혜자별 지원 현황)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
 - ※ '11) 58.2% → '12(잠정) 59.4% → '13(전망) 60.0%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고소득층·대기업 감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수혜자	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국세 감면액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비중)	△163,869 (58.2)	△170,189 (59.4)	△171,169 (60.0)
	고소득층·대기업 (비중)	△117,536 (41.8)	△116,275 (40.6)	△113,992 (40.0)
	(구분 곤란)	△14,616	△10,854	△12,472
	계	△296,021 (100.0)	△297,317 (100.0)	△297,633 (100.0)
조세 지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113,754 (64.9)	△115,554 (66.7)	△118,414 (68.1)
	고소득층·대기업	△61,643 (35.1)	△57,579 (33.3)	△55,372 (31.9)
	(구분 곤란)	△13,716	△10,272	△11,937
	계	△189,112 (100.0)	△183,405 (100.0)	△185,722 (100.0)

* 작성기준

- 법인은 일반기업·중소기업 신고 실적 활용
- 개인은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
* OECD 기준,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
- 농어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은 서민·중산층으로 구분
- 소득으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납부세액,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 구분 곤란: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참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및 작성 목적

- ①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연도,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하여 왔으며
 -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당해·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비교

구분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영기간	'99~'09년	'10년 이후
의무제출여부	임의제출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분야별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
대상기간	2개년도(직전·당해)	3개년도(직전·당해·다음)

- ②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목적)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의 연계를 통해 전체 재정지출의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 운용 가능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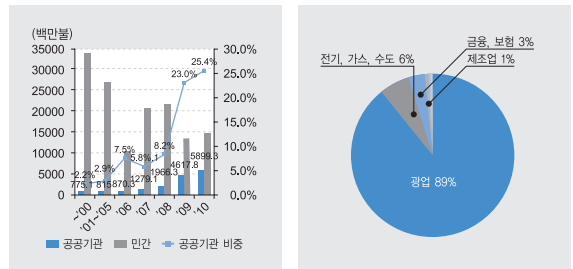
* 본 자료는 2012년 10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검토 배경

- ◇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기능도 증대
- ◇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우리 경제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바,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현황과 강화방안 검토

- 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
 - * 무역규모(억달러): (06)6,348 (07)7,283 (08)8,573 (09)9,866 (10)8,916 (11)10,796
 - 특히, 최근 FTA 확대*, 신흥국 시장개방, 우리나라 대외위상 제고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회는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
 - * 한-미(12. 3), 한-페루(11. 8), 한-EU(11. 7), 한-인도(10. 1) FTA 발효 등
- ②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내에서의 공공사업 수행을 주기능으로 설립되었으나,
 -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을 필두로 해외진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공공기관 해외진출 분야



자료: 수은

자료: 수은, '10년 누계 기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확대 배경

- ①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한 정책적 목적
 - 자원개발사업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 사업'으로,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데 한계
 - ☞ 국가 정책적으로 에너지공기업을 활용한 자원개발사업 추진
- ② 신성장동력 확보
 - 국내에서의 수익 증대 한계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도모
- ③ 공적개발원조 규모 증대
 -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증대해 감에 따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노하우 전수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증대

③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한 '민간부문 해외 진출 지원 기능' *의 중요성도 갈수록 증대

* KOTRA, 수출입銀, 무역보험公 등 1차 기관 고유 업무로 해외 진출 지원

광물자원公, 정보화진흥원, 농어촌公 등 2차 부수적 업무로 해외 진출 지원

- 특히, 대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등 필요

⇒ 공공기관은 스스로 '해외진출의 주체' 입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에 필수적
- 현재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원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추진

II.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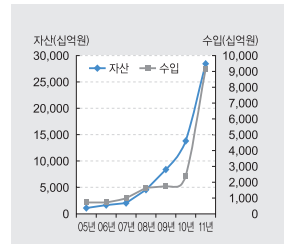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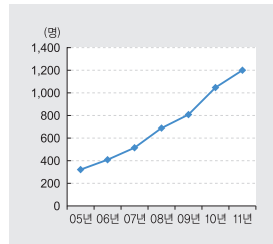
1. 현황

① 전체 288개 공공기관 중 214개 기관(약 74%)*이 글로벌 활동을 수행중으로, 글로벌 활동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유형별(비율): 공기업 26개(93%), 준정부 66개(80%), 기타 122개(69%)

- 주요 공기업의 글로벌 활동 관련 인력 규모(정규직 현원기준)는 '05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주요 공기업의 글로벌 활동 관련 수입과 자산규모는 '05년 대비 각각 13배 및 25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주요 공기업
글로벌 활동관련 인력 주요 공기업
글로벌활동 관련 재무지표



②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은 동기에 따라 ① 수익성 활동,

② 비수익성 활동 및 ③ 해외진출 지원 활동으로 분류

① (수익성 활동) 해외투자(자원개발 포함), 해외 발주 용역사업, 제품 수출 등으로 56개 기관(19.6%)이 수행

* 기관 예시: 석유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한전 및 자회사 등

② (비수익성 활동)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식공유사업(KSP)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교류활동으로 188개 기관(65.7%)이 수행

* 기관 예시: KOICA, 수은, 수공, LH,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③ (해외진출 지원) 민간기업 해외진출시 금융 지원, 정보 제공 및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등으로 52개 기관(18.2%)이 수행

* 기관 예시: KOTRA, 중진공, 수은, 정책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참고 분야별 활동 현황 분석

① (수익성 활동) 총 56개 기관이 수행중이며, 해외투자(27개), 용역사업(25개), 재화수출(13개) 등으로 구분

- (해외 투자) 대부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 투자(18개)이고, SOC·건설(5개), 농림(2개) 분야 등 -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공공기관 해외투자의 대부분 차지(금액 기준 약 96%)

* 공공기관 해외 직접투자규모(백만달러, '11년 상반기 송금기준, 수은)

: 전체(3,522.5); 석유공사(2,014.4), 가스공사(1,069.2), 광물자원공사(270.0)

- **(용역 사업)** 에너지(13개), SOC(7개), 금융(3개) 등 해외 투자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
 - * 원전사업(UAE 등), 발전소 기술지원, 철도 및 수도 설계 및 운영관리, 공항운영 컨설팅, 금융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 **(재화 수출)** 해외 용역사업 관련 장비·재료를 수출(발전소 설비, 항행장비 등)하거나, 시스템 수출*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수출(1,675만달러, '11년) 등
- **(기타)** 국내 투자유치 활동(JDC, 거래소), 초청 교육·연수사업, 현지인증 사업 대행 및 외국인 관광사업(명동·정동극장) 등

② (비수익성 활동) 총 188개 기관이 수행중이며, ODA 사업(58개), KSP사업(17개) 및 기타 협력활동 등

- **(ODA)** 수출입은행·KOICA가 유·무상원조사업을 총괄하며, 일부 기관에서 개별 부처 위탁이나 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
 -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행하거나, 초청연수·파견 교육을 통해 관련 노하우 전수
- **(KSP)** KDI(양자사업, 모듈화), 수출입은행(MDB 공동컨설팅)이 총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를 공공기관에 재위탁
 - 양자 KSP에서는 수출·중소기업 육성·금융제도 분야 활동이 대부분, 모듈화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
- **(기타)** 기관 자체적인 개발협력사업*, 기관 고유업무로서 국가 홍보활동(관광공사 등) 및 해외네트워크 형성·정보교류 활동**
 - * 대외 이미지 제고·네트워크 구축 위한 자체 개발협력사업(교육 등) 및 해외봉사 활동 등 추진(서울대병원, 지적공사 등)
 - ** 관련 국제회의 참석, 해외 유사기관과 협력 MOU 체결 등

③ (해외진출 지원) 총 52개 기관에서 금융·정보·마케팅·인력·기술지원 방법으로 민간 기업의 해외진

출 지원

- **(금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기관 고유 업무로서 지원, 그 외 분야별 금융지원(광물공사, 농어촌공사 관련자금 융자 등)
- **(정보)** 산업, 무역관련 기관(KOTRA, 중진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책자·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기관은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를 운영(KOTRA, LH 등)하여 정보교류
- **(마케팅)** 분야별 민간기업 홍보를 위한 국제행사 참석(KOTRA, 정보화진흥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중진공 등)
- **(인력)** 관련 기업에 인적 노하우 지원(원자력안전기술원), 글로벌 인력 채용 지원(KOTRA), 해외전문 인력양성 활동(중진공, 창업진흥원) 등을 통해 민간의 글로벌 전문성 강화 지원
- **(기술)** 공공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시험인증, 심사조사, 디자인 등)하거나, 민간에 기술전수

2. 문제점

①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내실화 미흡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공기업이 추진한 일부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
 - 자원개발 사업의 고비용·고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중한 타당성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부실화할 우려
 - * 감사원 지적사항(12. 4): 일부 해외자원개발 경제성 평가 부실, 리스크 검토 소홀 등
- 많은 공공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은 자원개발 공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
 - * '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 경쟁력을 해외기관과 비교한 결과, 공항서비스·전력산업효율성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
 - ** 해외용역사업 수행분야(기관 수, 비중): 에너지 (12개, 48%), SOC (8개, 32%), 금융 (3개, 12%), 기타 (2개, 8%)
 - ** 해외투자 분야(기관 수, 비중): 에너지 (16개, 59%), SOC (6

개, 22%), 금융 (3개, 11%), 기타 (2개, 7%)

② 공공기관의 ODA 사업 참여 미흡

-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난 몇 년간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참여는 저조
 - * 우리나라 ODA 규모(백만달러): (08) 802.3 (09) 816.0 (10) 1,173.8 (11) 1,321
- (유상원조) '10~'12년 공공기관이 수행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총 10건*이고, 본사업은 '10년 2건**에 불과
 - * '10년 4건(8.8억원), '11년 4건(13억원), '12년 2건(6.8억원)
 - ** 농어촌공사 양골라 농업현대화사업(211억원), 한전 방글라데시 송전망 개발사업(27억원)
- (무상원조) '11년 기준 KOICA 사업예산 중 공공기관의 수행 비중은 약 17% 수준 ('10년 24% → '11년 17%)
- (KSP) '11년 양자 사업(총 26건) 중 공공기관(KDI 제외)이 수행한 사업은 총 3건으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
- UN, W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400억달러*) 참여 실적도 저조
 - * '10년 기준: (UN기구)145억달러(36%), (다자개발은행) 254억달러(64%)
-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점유율은 약 2.4%(9.5억달러)*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진출 사례**는 저조
 - * 우리나라 진출추야: (08) 4.9억달러, 1.3% (09) 8.8억달러, 2.2% (10) 9.5억달러, 2.4%
 - ** 공공기관 수주 사례('10~'11, 백만달러): 농어촌공사(ADB, 3.3), 한국전력(WB, 45), 지역난방(EBRD, 0.4) 등

※ 공공기관의 ODA 사업 참여 필요성

- ① 민간이 참여가 곤란한 공공기관 독점분야에서 참여기회 확보 필요
 - * 예시: 전력·가스·담·도로·철도 등 SOC설비 운영 등
- ② 개도국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공·민 동반진출 등을 통해 민간의 해외진출 견인 가능
- ③ ODA 사업 수행을 통한 해외시장 인지도 및 사업경험(track record) 축적으로 수주 경쟁력 제고 가능

③ 공공기관 간 협력 미흡 및 기능 중복

-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은 주로 기관 단독 수행이 많고, 기관 간 협력은 한정적*
 - * 한전과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사업,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원개발 등
- 특히, 소관부처·분야가 서로 다른 공공기관 간 해외진출 협력 사례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파악
 - * 주요 공기업 등(29개)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현재 다른 분야의 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진출 사례 없음 ('12. 5월 기준)
 - * Package Deal(자원개발과 산업진출 연계사업 등)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대금회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최근 추진 사례 저조
-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일부 중복 소지
 - * (예시)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KOTRA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III.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평가: 문제 발생원인

①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 자원 부족

- (진출전략) 그간 공공기관은 국내사업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미흡

- 해외진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CEO 의지 및 경영상황 등에 따라 해외사업 추진이 크게 변동
- **(전문인력)** 해외사업 타당성 분석, 위험관리, 국제협상 및 계약 등에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 부족
- **(정보·노하우)** 진출 국가의 법률·행정·문화·계약관행 및 국제 입찰정보 등 관련 정보·노하우 부족
- 해외 진출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당 국가와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부재
- **(재원조달 능력)** 해외프로젝트의 대형화·고위험화에 따라 수주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 역량 미흡

②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미흡

- 공공기관의 대부분 해외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11년부터 공공기관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 중
- '11년에는 전체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12년에는 신규사업 27개 중 4개만 예타 실시 결정 (12. 3월)
- 기관 내부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객관적 심의에 한계

③ 공공기관의 ODA에 대한 참여 인식 부족

- 공공기관의 ODA 및 KSP 참여 인식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전략적인 연계 미흡
- 대부분 일회성 사업 수행에 따라, 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신뢰 축적을 통한 수익성 사업으로 연계 저조

④ 공공기관 간 협의·조정 체계 미비

- 공공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글로벌 활동을 종합 조정하는 협의·조정 체계 부재

- 현재 관련 공공기관 협의회는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거나, 단순 정보공유 차원으로 운영
- 공공기관 간 구체적인 공동 사업 발굴 및 중복사업 조정 등 실질적인 협의·조정기능 부재

※ 해외진출 관련 각종 협의회

① 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

- **(설치)** 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에 '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 설치
- **(목적)** 해외투자 진출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협력 방안 논의 등
- **(구성)** 한전 등 44개 공기업, 협회 등
- **(개최실적)** '10년: 전체회의1, 소그룹2, 교육1, '11년: 전체회의1, 소그룹2, 교육2, '12년: 소그룹3(하반기 중 전체회의, 소그룹 각 1회 개최 예정)

② 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협의회

- **(설치)** 발전사협력본부에 '전력산업 해외진출 지원사무국' 설치
- **(목적)** 정부 차원에서 전력산업 해외진출을 유기적 검토·지원
- **(구성)** 지경부, 한전, 발전5사, 민간중공업, 건설사(두산, 현대, 대우), 무역보험공사, 수은, 산은, KOTRA 등
- **(개최실적)** '11년 1회 개최

③ 해외 플랜트지원 협의회

- **(근거)** '해외 플랜트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 **(목적)** 플랜트 수주 이행상의 애로 해소 및 지원 전략 총괄
- **(구성)** 지경부·국토부 등 정부부처, KOTRA·수은·플랜트협회 등
- **(개최실적)** '11년 1회 개최

IV.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 공공기관의 해외경쟁력 확보 및 민간부문 진출 지원 -

공공기관	정부
1. 공공기관 내부 경쟁력 제고 ① 해외진출 공공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수립 ② 공공기관 해외 전문인력 확보 · 양성 ③ 공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2.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 관련 인프라 정비 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확대 ②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③ 공공기관 해외사업 금융지원 강화
3. 공공기관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① ODA 자금을 활용한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② 공공기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확대 ③ 공공기관 KSP 사업 활성화	4. 공공기관 해외진출 협력 · 연계 강화 ①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 설치 · 운영 ② 공공기관 해외진출 정보 시스템 마련 ③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 구축

1. 공공기관 내부 경쟁력 제고

- ① 해외진출 공공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수립**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강점 · 약점, 해외 경쟁기업 및 시장분석을 통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수립
 - * 기관별 '중장기 경영계획'에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포함
 -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단년도 해외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활용방안 마련
 - 수은 · 코트라 등의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을 활용하여, 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② 공공기관 해외 전문인력 확보 · 양성**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해외시장분석, 마케팅 등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 운영을 강화하

고 전문인력 확보 노력

-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의 해외전문직위를 위한 증원 협의시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검토

③ 공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공공기관이 해외사업 추진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원에 재무 ·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 · 감사 부서 등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견제 역할 수행
- 해외사업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모범 케이스*를 발굴하여 해외사업 초기단계의 공공기관에 전파
 - * 해외사업 추진시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 평가 · 계량화 방법 등

2.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 관련 인프라 정비

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확대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글로벌 활동 반영을 확대하고, 기관별 맞춤형 지표 개발*
 - * 예시: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 등 일부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로 반영
 - ☞ (개선) 적용범위 확대, 기관 수준별 맞춤형 지표 신설
- 해외사업이 통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평가 방안* 검토
 - * 예시 : 중장기적(3~5년)으로 수익성 등 해외사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되,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의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등

②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다수 사업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
 - * 예시: 기존의 절차적 요건(정책결정기구 결정)뿐 아니라 내용적 요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정부 간 협정사업 등을 충족시키면)

* 해외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신속성, 비밀유지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 수시로 예타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

-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토

2 공공기관 해외사업 금융지원 강화

- 자원개발·발전 등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

* 수출입은행(간사),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로 구성(12. 2월)

** 효율적인 공동지원을 위해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 체결(12. 6월)

- 수은·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사업 수행 수단계에 걸친 금융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

* 예시: 자원개발 탐사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제반 소요자금을 제공

- 해외 사업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금융자문·주선 등 해외 진출 관련 금융컨설팅을 제공

*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금융자문·주선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자문실'을 신설(12. 1월)하고 '금융자문부'로 확대(12. 6월)

3. 공공기관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1 ODA 자금을 활용한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공공기관의 주요 해외진출 사업을 EDCF 중점 지원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원
- 공공기관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개도국에 진출할 경우 일부 수익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검토

* 예시: 대규모 교량 건설, 상·하수도사업, 전력사업 등

2 공공기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확대

- KOTRA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에 유망한 공공기관을 선정, 단계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 'P300 프로젝트(지경부)' 선정되는 공공기관 수를 '13년 10개까지 확대, KOTRA·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밀착 지원

* 현재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P300프로젝트(지경부)'로 선정된 200개 기업 중 공공기관은 3개에 불과(한전 KPS, 지적공사, 철도공사)

2 공공기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활성화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유망 분야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KSP 사업 참여 확대 유도(→ 경영평가시 글로벌 활동의 일환으로 반영 검토)

- 공공기관의 정책자문으로 개도국과 신뢰도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관련 경험사업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의 수주로 연계

4. 공공기관 해외진출 협력·연계 강화

1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 설치·운영

- 주요 공공기관 간 해외진출 전략논의·공동사업 발굴·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글로벌 활동 협력 및 연계 강화 ('공기업 해외 진출 협의회'를 확대·개편)
- 협의회가 발굴한 공동사업 및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등은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 설치(안)

◇ (구성) 글로벌 활동이 활발한 주요 공공기관* 및 해외진출 지원 공공기관**의 기관장급

* 한전, 석유, 광물, 가스, NH, 인천공항, 도로, 철도, 농어촌, 농유통공사 등

**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ICA, 정책금융공사, 중진공사 등

- 진출 규모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운영 가능

◇ (기능) ① 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공유 · 논의

- ② 해외 공동사업 발굴
- ③ 글로벌 활동 관련 각종 정보 공유
- ④ 공공기관 유사 · 중복 기능 점검 및 조정 등

◇ (운영방식)

- (회의) 반기별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 회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무급 협의체도 함께 운영
- (의장) 참여 공공기관 중에서 선임
- (간사) 재정부 공공정책국(애로사항 파악, 모니터링, 대경장상정 등), 지정부 무역투자실 (KOTRA에서 사무국역할 수행)

② 공공기관 해외진출 정보 시스템 마련

- 현행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KOTRA 운영)' 을 확대 · 보강하여, 공공기관에 특화된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 OIS 내부의 공공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공기관 간 글로벌 활동 정보 공유 활성화

* 공공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그간의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KOTRA의 현지무역관을 통한 정보 및 On-line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KOICA의 'ODA 정보 공유시스템' 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방안 강구

- 수은 · KOTRA의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및 노하우 전달

③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Company Circle) 구축

- 해외 공기업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기업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교류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참가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네트워크 구축 기능분야: 에너지 · 자원개발, SOC, 농림 · 수산, 환경 등

- 해외 공기업을 통해 국가별 시장 정보 및 업무 관행 등을 공유하고, 정기적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 형성

V.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1. 공공기관 내부 경쟁력 제고		
① 공공기관별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수립	'13년 상반기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② 공공기관 해외 전문인력 확보 · 양성	'12년말 (*'13년 예산지침 반영)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③ 공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12년말 (*'13년 예산지침 반영)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2. 공공기관 글로벌 활동 관련 인프라 정비		
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확대	'13년	기획재정부
②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13년	기획재정부
③ 공공기관 해외사업 금융지원 강화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3. 공공기관 개발협력사업 활성화		
① ODA 자금을 활용한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
② 공공기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확대	'13년	기획재정부 (KOTRA)
③ 공공기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활성화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
4. 공공기관 해외진출 협력 · 연계 강화		
①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회」 설치 · 운용	'12년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② 공공기관 해외진출 정보 시스템 마련	'13년 상반기	KOTRA
③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 구축	'13년	주무부처

참고 1 그간의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 정책

1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발표('07. 1. 15, 재경부)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화 등의 규제완화,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07. 2. 27, 산자부)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능 강화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07. 4. 25, 재경부)
 -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아시아 구조조정·경제 개발 전문 PEF 설립,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3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발표('08.1, 재경부)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자금 지원 확대, 세제 지원, 정보제공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상에 문구 추가,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
 - *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
 - 해외진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기관(한전, 인천공항 등)의 설립법 및 정관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 근거 마련

참고 2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해외진출 관련 문구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
 - 민간 및 타 공공기관과의 동반/패키지 진출을 확대하여 위험분산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전문직위 설정,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양성하고, 동종 국내의 우수 기업 벤치 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 각 기관 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 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한다.
 -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 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할 수 있다.
 -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내부 유보를 통해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매분기 개시 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 전 타당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제반 예산집행절

차를 준수한다.

참고 3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기본방향)**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중동자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
 - * 우리 금융기관이 역량강화를 통해 자금조달과정에서 자문·주선 기능을 수행해야 중동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동 자금 활용 확대와 금융기관의 역량강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 **(추진전략)** 국부펀드 등 중동자금 활용을 확대하고 우리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역량을 강화
 - ① **(중동자금 활용 확대)** 중동 국부펀드와 공동으로 한-중동 플랜트펀드를 조성하고, 인프라 민관협력 T/F를 설치

- 중동 국부펀드와 함께 ‘한-중동 플랜트 펀드’ 조성
- 정부 간 협의체에 ‘인프라 민관협력 T/F(장관급)’ 설치
- 중동 현지(예: 사우디)에 금융기관 합동사무소 설치

- ② **(민간금융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민간금융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금융에 대한 단기상환제 도입을 통해 PF 참여를 활성화

-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IB화 추진
-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상환제 도입 등 협

조용자 활성화

- 규제완화, 타당성조사 지원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활성화

- ③ **(정책금융기관 역량 강화)** 연기금·정책금융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은·무보의 자금지원 노력 확충

- 장기의 고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 등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운영단계에서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
- 수은·무보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자금지원 노력 확보

참고 4 해외 공기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

1. 필요성

-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된 지배구조 개혁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마무리
 -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의 활동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field player(공기업)의 활동 및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 첫 번째 조치로서 현장의 경험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Asia 지역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2. 공기업 네트워크 구축방안

- **(1단계)** 각국 공기업의 참가수요를 파악하고 분야별로 그룹핑

주요분야 (예시)

에너지	금융	SOC	환경	농림·수산
고용·보건 ·복지	연구·교육	산업진흥 ·정보화	외교·법무	문화· 국민생활

- (2단계) 분야별 공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무국 기업을 선정
- (3단계) 분야별 공기업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아시아 공기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총괄하는 사무국 기업을 선정
 - 향후 운영계획 등은 정부 측에서 모니터링*
 - * 네트워크 회의 운영시 정부관료는 옵서버로 참석 가능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본 자료는 2012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 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 9~9. 18) 및 부처협의(8. 20~8. 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동 조세 관련 법안들은 9. 25(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별첨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①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기본법 §27①)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추 가> ■ 고액채납자에 대한 재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 채납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3개월전 독촉장 재발급 * 5억원 이상 체납 - 독촉장 재발급으로 시효가 중단 (1회 한정)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5억원 이상 국세채권 : 10년 <삭 제>

수정이유 ▶ 고액채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

② 포상금 지급사유에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기본법 §84의2)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루세액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 해외계좌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 (좌 등) • 법인,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수정이유 ▶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

③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조특법 §10)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증가분)의 조정 • 세액공제액=(당해연도 R&D 비용-직전연도 R&D 비용)×40%(중소기업 50%) - 다만,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기분산식* 적용 * 당해연도 R&D비용×3~6%(중소기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 직전 4년평균('12) → 3년평균('13) → 2년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수정이유 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④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기준 적용방식 변경(조특법 §91의15)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완화 • 가입기준(가입당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소득공제기준(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

수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

⑤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등을 위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당 초 안 (현행)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지역 - 기업도시 - 신발전지역 〈추가〉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 (좌 등)

수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등을 지원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안)」 (제13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12. 9. 5)

⑥ 퇴직소득공제 현행 유지(소득법 §48)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40 → 50%) ② 장기근속공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 (①+②) ① 정률공제: 퇴직소득×40% ② 장기근속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근속연수</th> <th>연간 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하</td> <td>30만원</td> </tr> <tr> <td>5~10년 이하</td> <td>50만원</td> </tr> <tr> <td>10~20년 이하</td> <td>80만원</td> </tr> <tr> <td>20년 이상</td> <td>120만원</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연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5~10년 이하	50만원	10~20년 이하	80만원	20년 이상	120만원
근속연수	연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5~10년 이하	50만원										
10~20년 이하	80만원										
20년 이상	120만원										

수정이유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 유지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국조법 §34)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계좌 확대 및 보유계좌 잔액 계산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증권 계좌 → 모든 금융 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1일 보유계좌 잔액 합산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기준으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부터 적용

수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8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 신고·납부기한(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1년 유예

수정이유 ▶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 등 감안

9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세법 §44의2, 별표)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표시사항 업무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 위생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첨가재료 업무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수정이유 ▶ 주류 첨가재료 업무 소관 조정에 따른 업계의 불편 해소와 관계부처 의견 등 고려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시론] 중장기 나라갯간 분석을 서둘러라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대선후보들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보편적 증세’를 제안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되든 다음 정부에서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악화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우리는 다행히 2009년 하반기부터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작은 파도를 넘었을 뿐, 훨씬 더 큰 파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복지 확대는 결국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연금과 의료비용 등 ‘고령화’ 관련 비용 지출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 복지 확대 요구, 경제 위기, 남북통일이 재정 정책의 큰 환경 변화이자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로 부상해 있다. 인구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라 2040년이면 주요 국가 중

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통일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일 비용이 통일 시기 및 복지 보장 수준에 따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나 통일 비용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대부분 증세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만으로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는 2009년 GDP의 9.6%에서 2050년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2%를 넘어선다고 한다.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25%에서 30%로 상승하고, 국가채무도 GDP의 33%에서 12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치권의 4·11총선 공약을 추가하면 2050년 복지 지출 규모는 GDP의 22.6~24.5%로 더 증가하는데 재원 조달 공약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1~3%포인트 더 올라가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103~115%까지 상승한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20%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 집권 기간 중에 늘어나는 복지 지출은 재원 조달 공약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은 차기 정부 이후에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 5년 동안만 지속가능한 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재정 위험이 현실화되고 2040년경 남북 통일이 된다면 2050년의 국민부담률은 현재보다 8~10%포인트 올라가고 국가채무비율은 154~165%까지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 운용의 핵심인 재정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하루빨리 한국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전망처럼 미래 재정 위험 요인별로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에야 정부 차원에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기획재정부의 리더십과 각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중장기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동아일보, 2012-10-18)

부가세 조정, 중장기적 연구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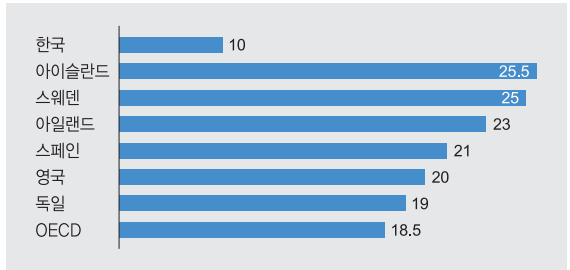
17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부가가치세율이 조세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에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는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대표적인 역진세제라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별로 소득 대비 부가세 비중을 따져본 결과 하위 20%와 상위 20% 간 격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에는 면세 품목이 많은데 저소득층일수록 면세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생활필수품은 대다

수 면세 품목이다. 예컨대 흰우유는 세금이 없지만 딸기·초코우유는 과세 대상이다.

주요국 부가세율

(단위: %)



자료: OECD,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적자국 부가세 얼마나 올렸나

이탈리아	20% → 21%(2011년 9월)
영국	17.5% → 20%(2011년 1월)
스페인	18% → 21%(2012년 9월)
그리스	19% → 21% → 23%(2012년 10월)
일본	5% → 8% → 10%(2015년까지 단계적 인상)
아일랜드	21% → 23%(2012년 1월)
포르투갈	20% → 23%(2011년 1월)
라트비아	21% → 22%(2011년 1월)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 상당수가 고령층인데 이들은 기초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상 향후에도 역진성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중장기 과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고령화로 복지 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도입 여부를 떠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품은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사치품은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복수세율 도입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 과정

에서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처럼 부가세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목보다 조정에 대한 조세 저항이 낮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작년 정부가 징수한 총국세는 192조 4,000억원으로, 이 중 부가세 비중은 26.9% (51조 9,000억원)로 단연 최고다. 현 10% 세율을 15%로 인상하면 단순계산으로 25조 9,500억원에 달하는 새 수입이 발생한다. 재정 왜곡 효과도 낮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높이면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가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을 활용해 복지 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 유럽은 덴마크·스웨덴 25%, 영국 20%, 프랑스 19.6%, 독일 19% 등 20% 안팎이다.

〈매일경제, 2012-10-17〉

공공기관 경영평가 근거 ‘고객만족도 조사’ 문제있다

총 173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거래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사전 회유작업 등을 통해 응답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속 김지영 부연구위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9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모집단 숫자가 적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8%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간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만족도 조사를 사후 검증할 정도로 공신력 있는 조세연구원이 문제점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은 “현재는 모집단이 클수록 부당하게 손해 보는 구조”라며 “모집단 대비 표본집단 비율에 따라 집단을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2012-10-10〉

조세연구원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해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하고 선거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들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미 정부와 의회뿐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 공약사항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 중립 의무준수’를 이유로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중립적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 각종 선거 공약사항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10-02〉

재정포럼

2012년 10월호 통권 제19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10월 15일 발행 / 제16권 제10호(통권 제19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 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 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